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김 지 혜

2009년 2월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김 지 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김지혜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2월

A Study of Virtuous Women of Jeju
in Joseon Dynasty

Kim Ji-Hye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9.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Virtuous Women of Jeju in Joseon Dynasty

This paper focused on the virtuous women of Jeju in Joseon Dynasty. The ruling party which founded the Joseon Dynasty consisted of a man of noble birth who emphasized moral principle. That is, they adopted neo-confucianism as the basic idea of policy and emphasized the culture of public morals in order to form the confucian system of value. So the moral standard was emphasized and various prizes were awarded to virtuous women.

The administrators gave prize to virtuous women primarily to encourage the ethical spirit that remained in the heart of the people and ultimately to establish a king-centered society by forming a male-domanated society.

The virtuous women who remains chaste to her husband in death when meeting with a danger or who keeps her integrity unsullied for a long time. Although it's not difficult to see virtuous women, it's natural for women to remain chaste to her husband in death when meeting with a danger as well as to keep chastity if whoever was great and small had been a widow in Joseon Dynasty. But then, for getting praise, admiration, accolades and written in the book, i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dead women who took care of their sick husbands beyond the call of duty and committed suicide for their husbands who had already run out instead of remaining chaste to her husband in death when meeting with a danger. Also, their descendants found ancestors' deaths honorable. The families with virtuous women were held in high esteem and set great store by the head of the

hometown. So, there appeared imposters and many side effect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social position, in virtuous women, scholar took 40.14% out of it, common people took 9.47% out of it, women of low birth took 7.87% out of it.

There were a small number of virtuous women in the 15th to 17th century. But it was picked up considerably in the 18th.

Jeju is a long way off main land, so it has unique history and culture. So, it is hard to root confucian ideas because of fork beliefs. Although Jeju was too late the time, Jeju also settled down chaste ideology by education. And, the virtuous women grewed rapidly in the 19th century.

It's timeworn to reinterpret to virtuous women of this day though medieval values. However, now, we can't make ourselves so free from the traditional values of Joseon Dynast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유교문화와 정절관	5
1. 유교사회와 정절관념	5
2. 정절관과 열녀	9
III. 조선시대 제주 열녀의 실태	19
1. 제주 열녀의 실태 분석	19
1) 신분과 시기별 열녀 분포	19
2) 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	26
2. 제주 열녀의 열행 분석	28
1) 열행의 의미와 분류	28
2) 열행의 사례 분석	29
IV. 제주지역 열녀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	36
1. 제주 열녀의 특징	36
2. 열녀의 사회적 의미	41
V. 맺음말	45
참고문헌	50
<부록> 조선시대 제주 열녀 목록	54

표 목차

<표 1> 제주 열녀의 신분별 분포	21
<표 2> 제주 열녀의 시기별 분포	23
<표 3> 제주 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	24
<표 4> 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	26
<표 5> 제주 열녀의 시기·지역별 분포	27
<표 6> 제주 열녀의 유형별 분포	29
<표 7> 수절형 열녀의 세부 유형별 분포	30
<표 8> 자결형 열녀의 세부 유형별 분포	31
<표 9> 제주 열녀의 신분별 유형 분류	32
<표 10> 제주 열녀의 시기별 유형 분류	33



I. 머리말

조선은 유교적 위계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였다. 모든 사회 질서가 남성 중심으로 흐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당당히 구하지 못하였다. 시대가 추구하는 순종적이며 정절을 목숨처럼 여기고, 근면검소 하는 유교적 덕목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여성상이란 틀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간혀 살아야 했다.

즉 조선의 여성들은 양반 중심의 유교적 사회 질서 체제 속에서 가부장적 구조 유지에 필요한 윤리 규범을 무조건 따라야 했고, 통제되고 억압되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단순히 수동적이거나 어쩔 수 없었던 삶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주체성을 키워나갔던 여성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시대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정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제주지역의 열녀 실태와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열녀는 위난(危難)을 당하여 목숨과 정조를 지키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한 부녀자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열녀(烈女)와 열부(烈婦)를 통칭한다. 본래 열녀는 혼인 전에 약혼자가 죽었을 경우 그 뒤를 따라 죽는 여인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강포자(強暴者)에 항거하는 미혼녀라 하였고, 열부는 기혼녀로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 부인 및 목숨을 끊음으로써 강포자에 항거하는 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

그러나 열녀와 열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열녀라는 단어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도 두 단어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녀라는 단어를 통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열녀는 귀천상하(貴賤上下)를 막론하고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하고 위난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서 정착되었다.

1) 한국정신문화원 편,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제15권(한국정신문화원, 2000), 419~421쪽.

조선시대 여성은 아들을 낳아 부계혈통을 잇고 남편과 시가(媿家)를 위해 열녀, 효부가 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유교이념이 가부장성은 여성들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삼은 것이 정표정책(旌表政策)이다.²⁾

정표정책은 성리학적 여성관을 정착 시키고 유교적 순결관을 강화하기 위해 수절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열녀라 하여 그들의 행적을 널리 알리고 후세의 규범으로 삼아 정문(旌門) 또는 정려(旌閭)를 세워주고 포상하는 제도이다. 정표정책에 의해 정려되는 것은 양반의 경우는 가문의 명예였으며 공사천(公私賤)의 경우는 면천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신분상승의 통로였다.³⁾

정려란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으로 효자, 충신, 열녀를 배출한 집이나 마을 앞에 세우도록 한 붉은 색 문이다. 다른 명칭으로 정문(旌門), 홍살문(紅箭門), 작설(綽楔), 도설(悼楔), 홍문(紅門)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포상 내용을 살펴보면, 상으로 관직 또는 비단, 곡식 등을 내리고 경제적으로 복호(復戶) 등으로 무거운 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자손에게 부역을 경감해 주었다.

태조는 즉위한 후 그 해 7월에 충신(忠臣)·효자(孝子)·절부(節婦)의 일은 풍속(風俗)에 관계되니 권장하여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로 삼으라고 하였다.⁴⁾ 그 후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효자·열녀를 포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⁵⁾

조선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열녀로 정표된 자가 급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열 관념과 열녀의 사회적

2) 이민주·김혜순, 「조선시대 열녀를 통해 본 대구지방의 가부장성」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한국사회학학회, 2005), 633쪽.

3) 이민주·김혜순, 앞의 논문, 634쪽.

4)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조, 「忠臣, 孝子, 義夫 節婦, 關係風俗. 在所獎勵. 令所在官司, 詢訪申聞, 優加擢用, 旌表門閭」.

5)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9월 16일 정미조,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정월 갑술조.
『세종실록』 권2, 세종 1년 11월 기유조.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2월 무술조.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무술조.

의미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열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대부분 구전 설화나 특정 윤리서를 기초로 한 국문학 분야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제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어서 역사적 사실 고찰이 미흡하다.⁶⁾

그리고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성과는 적다.⁷⁾ 박주⁸⁾는 조선시대 정표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겼고, 고두행⁹⁾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열녀를 분석하였으나, 단순히 수치상 분석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역사 분야에서의 열녀연구는 조선시대 특정 지역의 열행 사례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한 단편적인 논문이 주를 이룬다.

제주지역 열녀에 관한 연구는 문순덕의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 열녀들의 삶』¹⁰⁾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순덕은 문헌 사료의 사례와 구비설화, 속담에 기록된 열녀이야기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여성문화로서의 열녀를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열녀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 6) 강진옥, 『열녀전승의 인물형상화 방식과 서술시각을 통해 본 여성적 대응 양상』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 속의 여성』(94년도 서남재단 학술지원 보고서, 1994).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제13집(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인경, 『구비 열 설화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제30집(성곡학술문화재단, 1999).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선산지방의 향량이 “국가 열녀”로 환생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3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 열녀담론』, 월인, 2002.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烈女の 죽음과 虛構性』(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7) 권순형, 『고려시대의 수절의식과 열녀』 『여성-역사와 현재』(국학자료원, 2001).
이영식, 『朝鮮前期 孝子·烈女와 그 類型』(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정주, 『조선시대 정절 윤리의 실천자와 신분』 『역사민속학』제24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_____,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제28권(한국사상학회, 2007).
이현, 『조선시대 마산, 창원지역의 효자, 열녀 사례 분석-거제, 남해, 고성, 하동을 중심으로-』 『가라문화』제15집(전남대학교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2001).
홍윤표, 『삼강행실도의 서지 및 국어사적 의미』 『진단학보』제85호(진단학회, 1998).
- 8) 박주, 『朝鮮時代의 旌表政策』(일조각, 1999).
_____,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국학자료원, 2000).
- 9) 고두행, 『東國輿地勝覽 孝子·烈女條의 分析』(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0) 문순덕,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열녀들의 삶』(각, 200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의 관찬사료,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지(耽羅誌)』 등의 지방 읍지와 문헌들, 1834년 간행된 『효열록(孝烈錄)』, 1906년 간행된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1954년 간행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등의 문헌 기록을 토대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의 실태와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조선시대 정절관의 정립과정과 함께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았다. III장에서는 문헌사료에서 나타난 제주열녀 기록을 토대로 그들의 신분별, 시기별, 지역별, 유형별로 제주지역 열녀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열녀자료를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제주사회 안에서 열녀가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가부장적 유교사회에서 힘겹게 살아온 제주 열녀들을 통해 척박한 제주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II. 유교문화와 정절관

1. 유교사회와 정절관념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 불교와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이념이었던 유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었고, 그 절정이 바로 조선시대였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배불숭유(排佛崇儒)운동의 선봉자였고, 건국초기부터 유교적 통치이념을 강조했다. 태조대부터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 사찰 정리와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는 등 불교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 태종대에는 더욱 적극적인 억불책(抑佛策)이 시행되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찰은 전지와 노비를 몰수했으며, 전국의 사원을 12宗 242寺로 줄이고 국사제(國師制), 왕사제(王師制)도 폐지했다.¹¹⁾

그 결과 불교는 종교적 기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정치이념, 학문, 윤리문제에 있어서는 유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유교이념이 단순히 통치원리로만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의식과 관습에 뿌리를 내려 사회의 전반적 가치 기준으로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교이념의 보편화와 국민에 대한 교화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¹²⁾

조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열녀전을 수입하여 그 체제를 근간으로 세종대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제작하게 되면서 여성의 열 의식을 강조하게 되었다. 성종대 소혜왕후는 『내훈(內訓)』을 써서 여성들에게 읽도록 하였고, 중종대는 풍속 교화를 위해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를 간행하였다.

11)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1월 21일 계축조, 「議政府上書請革寺社田口. 時, 金山寺 住持 道澄. 奸其寺婢 姜庄, 姜德 兄弟, 土田所出, 奴婢賁貨, 竝皆私用. 臥龍寺 住持 雪然 奸其寺婢 加伊 等五名.」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3월 27일 정사조.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윤7월 1일 무오조.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1월 12일 정묘조.

12) 이영식, 『朝鮮前期 孝子·烈女와 그 類型』(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쪽.

또한 홍문관에서 『소학(小學)』을 한글로 번역 반포하여 교화할 것을 아뢰면서, 당시 상황을 “도학이 밝지 못하고 교화가 쇠퇴하여 규문의 법도가 설만하고 문란하여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상께서는 심학(心學)에 침잠하고 인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 이미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을 명찬(命撰)하시고 또 『소학(小學)』을 인행(印行)토록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위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격월(激越)한 행실이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녀들은 독습(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일용(日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열녀전(列女傳)』·『여계(女誡)』·『여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인반(印頒)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궁궐(宮掖)으로부터 조정 경사(朝廷卿士)의 집에 미치고 아래로는 여염의 소민(小民)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강습하게 해서, 일국의 집들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소서. 그러면 괴기(乖氣)는 사라지고 천화(天和)가 응하여, 사람마다윗사람을 친히 하고 관장을 위해 죽는 효용이 있게 될 것입니다.¹³⁾

그 이후 광해군대에 와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발행하였고, 영조대에 와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발행했다. 18세기에 『오륜행실도』를 발행한 이유는 신분질서의 변동 속에서 유교질서의 와해를 우려하는 지배층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처럼 조선사회에서 유교전적을 반포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덕교화의 중요한 방식이었다.¹⁴⁾

조선 전기 성리학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윤리실천의 강조를 통해 지배층들은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세우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이념을 강화하였다.

조선은 삼종지도(三從之道), 남존여비(男尊女卑), 여필종부(女必從夫), 칠거지악(七去之惡)¹⁵⁾ 등 유교적 규율을 정해놓고 여성들에게 오로지 순종과 인내만을 미

13) 『중종실록』 권 28, 중종 12년 6월 27일 신미조.

14) 김미영, 「조선의 유교화 과정에 나타난 女德 담론 분석(1)」 『여성학논집』 제25집(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2008), 14쪽.

덕으로 삼으며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유교덕목을 두루 갖춘 여성이 되기만을 강요했던 사회였다.

즉 남성과는 다른 차별적 여성생활과 문화를 지키게 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유교사회를 떠받치는 정초(定礎)가 되기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는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논리가 실제화된 것을 말하며, 사회적인 강제와 장려를 통해 조선사회에 적용됨으로써,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계속해서 여성들에 대한 금제(禁制)를 만들어내고, 성종대에 이르러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으로 집약된다.

성종 8년 7월 18일 기사를 보면,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신(信)은 부덕(婦德)이니, 한 번 더붙어 함께 하였으면, 중신토록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리므로 삼종지의(三從之義)가 있고, 한 번도 여기는 예(禮)가 없더니, 세도(世道)가 날로 비속(卑俗)하면서부터 여자의 덕이 부정(不貞)하여, 사족(士族)의 여자가 예의(禮義)를 돌보지 않고, 혹은 부모가 뜻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중매하여 사람을 따르니, 스스로 가풍(家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명교(名教)를 점오(玷汚)하게 함이 있으니, 만약 금방(禁防)을 엄히 세우지 않으면 음벽(淫僻)한 행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子孫)은 사판(士版)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하였다.¹⁷⁾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의 제정으로 정절의 관념화는 한 단락의 획을 긋게 되는 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며, 양반 신분 유지의 요건이었던 사족(士族)들에게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정절에 대한 가장 철저한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¹⁸⁾

15)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칠거지악은 질서를 교란시키는 죄목이었다. 일곱 가지 죄목 죄목이란 순종하지 않은 죄(不順父母),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한 죄(無子), 음란한 행위를 한 죄(淫僻), 남편의 다른 여자를 질투한 죄(嫉妬), 나쁜 병에 걸린 죄(惡疾), 말을 많이 한 죄(多口舌), 남의 물건을 훔친 죄(竊盜)이다.

16)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 여성학』 창간호(한국여성학회, 1985), 7쪽.

17) 『성종실록』 권82, 성종 8년 7월 18일 계미조, 「傳旨禮曹曰: “傳云, ‘信, 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是以有三從之義, 而無一違之禮. 自世道日卑, 女德不貞, 士族之女, 不顧禮義, 或爲父母奪情, 或自媒從人, 非徒自壞家風, 實是有玷名教, 若不嚴立禁防, 難以止淫僻之行. 自今再嫁女子孫, 不齒士版, 以正風俗.”」

그러나 ‘재가녀자손금고법’의 대상이 양반층이라는 이유로 재가금지가 상민에게 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상민과 천민층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상 양반 부녀자들이 실천하는 내외법이나 외출규제와 같은 규범을 지키기는 힘들었겠지만 수절에 대한 관념은 신분과 계층에 상관없이 전 신분층에서 나타난다.

조선후기는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국가의 지속적인 유교 보급과 정표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정절관념은 조선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진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사회 질서 회복과 안정 추구의 정책으로 예를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적 시책과 가문의식이 결합되어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¹⁹⁾

임진왜란 당시 무수한 여성의 희생으로 열녀의 수가 수도 없이 증가했고 전란 후 혼란한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조선은 의도적인 열녀 권장 정책을 강화했다. 그리고 사대부 계층의 여성뿐만 아니라 열녀로 정표되는 평민 여성의 수가 조선 전기에 비해 급증하는 양상은 사대부 여성들에게 한정되었던 정절 관념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열 관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양반 사대부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정통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문의 여성에게 부여된 도구화된 이념이었다. 후기에 가면서 이러한 열녀 표창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상제도로 인해 하층민에까지 전파되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절관념은 유교사회에서 여성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형성과 확립은 유교적 여성관의 확립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나아가 한국 역사에서 가부장제 확립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²⁰⁾

18) 이옥경, 『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33쪽.

19) 17세기에는 예를 절대시하는 의식의 영향으로 문벌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선조의 행적을 밝혀 정표를 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가문 위주의 정표도 많았으므로 인조대, 효종 대에는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정표를 청하는 장소 등 자손의 상言으로 인한 정려포상 사례가 적지 않았고 자손이 나섬으로써 정표가 더욱 쉽게 주어질 수 있었다.(박주,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 제20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83~104쪽).

2. 정절관과 열녀

열녀는 남편에 대해 정절을 지킨 여성을 말한다. 남편이 죽은 뒤 수절을 한다거나, 따라 죽는다거나, 외간 남자의 정조 유린 위협에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해 정절을 지킨 여성들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자연적인 감정의 발로일수도 있다. 남편 혹은 약혼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여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성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열녀이다. 즉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 누군가가 그녀들에게 열녀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행위를 아름다운 일로 규정해 상을 주는 등 제도화하고, 남들에게 따라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열(烈)은 과거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정신문화의 일부이며 윤리덕목이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녀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수많은 예서를 통한 학습으로 열 관념을 강화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보이는 수절(守節), 정절(貞節), 실절(失節), 순절(殉節) 등도 모두 열의 범주에 드는 것인데 이러한 단어들은 열의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이중 열행에 해당될 경우 열녀로 칭송되었다.²¹⁾

정절 관념의 정착을 위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열녀의 정표정책을 시행하였다. 열녀가 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며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서 국가에서도 신중하게 발굴, 심사, 표창하였다. 구체적인 정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의 김덕련(金德連)과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의 서공(徐恭), 예산현(禮山縣)의 이개우(李開祐)와 경상도 경주(慶州)의 허조원(許調元), 언양현(彦陽縣)의 박효원(朴孝元), 김해부(金海府)의 송윤화(宋允和) 등은 그 아버지가 못된 병에 걸리니 모두 손가락을 잘라 약을 지어 먹여서,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제주(濟州) 고정(高征)의 처 양씨(梁氏)는 남편이 죽자 시신(屍身)을 안고 통곡

20) 이옥경, 앞의 논문, 33쪽.

21) 진재교, 「이조후기 한시에 나타난 ‘열’의 시대상」 『조선시대의 열녀담론』(월인, 2002), 185쪽.

하며 죽으려 하므로 그 어머니가 두려워하여 데리고 그 집으로 오자 하루는 스스로 목을 매었으나 그 어머니가 풀어 주어 죽지 않았는데, 연상(練祥)이 되어 어머니의 감시가 좀 소홀하자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합니다. 이들은 모두 끈은 절조(節操)가 있으니, 청컨대 각각 쌀 10석(石)씩 주어 풍속(風俗)을 권려(勸勵)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教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²²⁾

(2) 장씨는 본관이 인동인데, 품성이 정숙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발랐다. 시부모를 정성과 효도로 봉양하고 일가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었으므로 마을에서 감탄하였다. 지난 신유년(辛酉年), 즉 철종 12년(1861)에는 남편이 여러 해 신병으로 임종할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자르고 수혈하여 몇 달을 연명케 하였다. 끝내 사망하자 종신 과부로 수절하며 아들을 가르치어 본업을 지키었으니, 그 전말의 소행을 포양(褒揚)하지 않을 수 없어, 고종 18년(1881)에 마을에서 연유를 갖추어 관아에 보고하니 원문을 내리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이에 도설(棹楔)을 세운다.²³⁾

(3) 서울과 지방에서 효자와 열녀를 뽑아 아뢰는 일은 일찍이 선조(先朝) 임진년(1772년: 필자)에 대사헌 엄숙(嚴壽)이 아뢴 것을 계기로 매년 세수(歲首)에 서울과 시골에서 단자(單子)를 받아 정월(正月)에 월말의 차대(次對)에서 예조 판서가 가지고서 취사(取捨)를 아뢰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습니다. 지금 임인년(1782년: 필자) 정월 조참(朝參)에서 본조(本曹)의 판서 김노진(金魯鎭)이 매년 세수에 세 당상관이 같이 모여 정려(旌閭)와 복호(復戶) 대상자를 구별하여 의정부로 이송하기를 서경(署經)하는 예(例)처럼 한 연후에 계하(啓下)하도록 청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정문(旌門)을 세워 포상하는 법을 만약 식년(式年)을 기다려서 시행하게 되면 보고서가 적체되고 만약 도착하는 대로 그때그때 아뢰게 한다

22) 『단종실록』 권12, 단종 2년 8월 17일 병신조, 「濟州 高征 妻 梁氏, 夫死, 抱屍痛哭, 欲死之, 其母懼, 携至其家, 一日自縊, 其母解之, 得不死. 及既練, 母防禁稍懈, 遂縊死. 竝有烈操, 請各給米十石, 以勵風俗. 從之. 初, 下教求孝子, 節婦, 至是, 諸道監司錄其實跡以聞」

23) 처사 임유근의 처 장씨 비석(1937년 건립, 소재지: 한림읍 대림리 가새기왓)

앞면 「處士任有根妻 孝烈張氏之閭」

뒷면 「氏籍仁同 稟性靜淑 操履堅貞 養舅姑以誠孝 虔宗族以睦 鄉里欽歎 輿在辛酉 家夫積年身病 垂終之境 斷指出血 甦保數月之命 終乃捐館 自少至老 寡居守節 教子守業 顛末所行 不可无褒揚 故去辛巳 面洞具由 牒報于官 完文昭在 世遠年久 慮有泯默 茲立棹楔焉 昭和十二年九月 日」

면 번거로운 데 가까우니, 청컨대 2월의 연교(筵敎)에 의하여 자손이 조선(祖先)을 위해서 한 것이나 읍리(邑里)에서 다른 사람의 선조를 위해서 올린 것을 따지지 말고 영읍(營邑)에서 여러 차례 올려 격식을 갖춘 연후에, 상언(上言)한 것은 바야흐로 심리(審理)를 허락하고 도신(道臣)이 별도로 채방(採訪)한 것은 매년 정월에 장계(狀啓)로 정지하여 올려 보내게 하여, 본조에서 영읍의 보고한 글을 자세히 살펴 정표(旌表)할 차례를 정해 의정부로 보내어, 시임 상신(時任相臣)이 서경(署經)한 연후에 입계(入啓)하여 시행하면 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²⁴⁾

단종 2년 8월 17일 기사인 사료 (1)을 보면 제주(濟州) 고정(高征)의 처 양씨(梁氏)의 열행이 예조에 아뢰어져 쌀 10석과 절부(節婦)의 교지를 내리고, 그 행적을 기록하여 남기라고 하였다. 사료 (2)는 처사 임유근(任有根)의 처 장씨(長氏)의 비문으로 장씨의 열행을 마을에서 관아에 보고하여 정려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그리고 정조 11년 3월 10일 기사인 사료 (3)은 정표 절차와 정문을 세월 포상하는 시기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 2년 1월 21일 기사를 보면 열녀로 추천이 된다고 해서 다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외에 교서를 내리어, 효자(孝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무릇 수 백인이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그 중에 특행(特行)이 있는 자를 추리라.”하고, 정초를 명하여 예조에 올린 행장 기록을 가지고 좌·우의정과 의논한 결과 무릇 41인이었다.²⁵⁾

열녀로 정려가 되면 구체적인 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문(完文)을 내리고, 상으로 관직 또는 비단, 곡식 등을 내리고 경제적으로 복호(復戶) 등으로 무거운

24)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3월 10일 무인조, 「京外孝烈抄啓, 曾於先朝壬辰, 因大司憲 嚴禱 所啓, 每年歲首, 京鄉捧單, 孟春朔末次對, 宗伯持奏取舍, 著爲式. 今壬寅正月朝參, 本曹判書 金魯鎮, 以每年歲首, 三堂齊會, 區別旋復, 移送政府, 如署經之例, 然後啓下爲請蒙允, 而旌褒之典, 若待式年, 則所報積滯, 若隨到隨啓, 則近於煩屑, 請依二月筵敎, 毋論子孫之爲祖先, 邑里之爲他人先, 營邑屢呈見格, 然後上言者, 方許聽理. 道臣另加採訪, 每年正月修啓上送, 本曹詳覽營邑之報辭, 定其旌表之次第, 送于政府, 署經于時任相臣, 然後入啓施行, 實合事宜」

25) 『세종실록』 권10, 세종 2년 1월 21일 경신조, 「上初卽位, 下敎中外, 求孝子, 節婦, 義夫, 順孫所在, 以實迹聞, 凡數百人. 上以爲宜簡特行, 命 鄭招, 以禮曹所上記行實狀, 議於左右議政, 凡得四十一人以聞」

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자손에게 부역을 경감해준다.

당시 내려진 완문(完文)²⁶⁾ 내용을 보면 어떤 열행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지고, 포상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고종 18년(1881) 백낙연(白樂淵) 목사가 쓴 완문 기록을 보도록 하겠다.

완문을 작성하여 발급(發給)하는 일인즉, 신우면 고내리 두민(頭民)의 보고에 접하여 보니, 본리 문철식(文哲式)의 처 고씨가 위로는 시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를 잘 살피어 능히 부도(婦道)를 다하였는데, 앞서 을축년(1876년, 당시 고씨 23세: 필자)에 흉년이 들자, 그 남편이 양곡(糧穀)을 사오기 위하여 육지에 나가던 중 불행히도 바다에서 표류(漂流)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그녀는 곧 바다를 바라보며 죽고자하니 시부모님들이 울면서 타이르기를 “잠시 기다리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니 후사(後嗣)를 끊지 말라”하였으므로 큰 마음으로 억누르고,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 빌며,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발원(發願)하였는데, 다음해에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1남 1녀를 낳았다.

또 신미(1871년, 당시 고씨 29세: 필자)에 남편이 우연히 신병(身病)을 얻어 장차 운명(殞命)하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입으로 수혈하였더니 잠시 동안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때도 면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가상히 여기는 글까지 내린바 있었는데, 이제 딱자국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병자년(1876년, 당시 고씨 34세: 필자)에 그 남편이 또 신병으로 죽었으므로 빈엄(殞殮)한 후에 그녀는 울면서 시부모에게 말하기를 “아기가 나서 8세가 되었으니 죽어 대(代)를 이을 수 있을 것이오니 첩(妾)은 이제부터 영결(永訣) 하겠나이다.”하고 말을 마치자 10여일을 절식(絶食)하여 순절(殉節)하였다.

이와 같이 높고 뛰어난 행실은 묻혀 둘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관(官)에 보고한 것이니 역시 조치(措置)를 하게 된 것이다. 아! 여자의 행실에 있어서 효(孝)와 열(烈) 단지 두자에 불과하지만 능히 시부모의 명(命)을 받아 아들을 낳아 대(代)를 잇게 하였으니 이는 효라 할 것이요. 또 남편과의 부부의 맹약(盟約)을 지켜 같이 죽었으니 이는 열(烈)이라 할 것이다. 하물며 또 지혈(指血)로써 연명(延命)하게 하였으니 또한 어려운 일이로다. 여자의 한 몸으로 효와 열, 양쪽을 온전히 하였으니 포상의 은정의 예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돌아간 고씨의 제사를 모시는 아들 혹은 손자에게는 노역(勞役) 일체

26) 호조(戶曹)·병조(兵曹) 등의 중앙관서, 감영·군(郡)·현(縣) 등의 지방관청이 개인·서원(書院)·단체나,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부동산·조세(租稅)·부역(賦役)·군역 및 면(面)과 리(里)의 공적(公的) 경비에 관해 발급한 문서이다.

를 법전에 의하여 면제할 것을 여기에 완문으로서 주는 바이다.²⁷⁾

이 완문(完文)은 제주목 고내리 천민 문철식(文哲式)의 처 고계현(高癸賢)에게 내려진 것으로 고씨의 열행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특히 열녀 고계현의 제사를 모시는 자손에게 노역 일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통해 열녀로 정표된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국가가 열녀로 포상한다는 것은 여성이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즉 조선시대 여성은 열녀를 통해 사회적 여성으로 그 정체성을 구체화하게 된다.

유교 윤리의 정착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표정책을 장려하였다고 하나, 조정에서 열녀로 정려를 내려주는 절차는 간단하지는 않았다. 암행어사, 관찰사 혹은 유림의 천거에 의해 예조에서 국왕에게 전달하여 결정하였다. 예조에서 이를 다시 심사해서 국왕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상민이나 천민은 뛰어난 열행이 있어도 정려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각종 관계로 얽혀 있었던 사대부 집안에서는 작은 근거만 있으면 통문을 돌리고 상소하여 많은 정려를 받았다.

여성은 과부가 되면 도덕적으로 자결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의무적으로 행해야하는 ‘열의 실현’에만 얽매어져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 과부의 죽음을 찬양하고 조직적으로 여성의 열 관념을 권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열녀를 만들어 낸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전기는 국가적 전란이 없었고, 여성들의 활동 범위도 부녀상사금지(婦女上寺禁止)와 같은 법적규제²⁸⁾를 통해서 가정 내로 제약했기 때문에 자연히 열행의 범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규범적인 성격으로 한정되었다. 그

27) 「爲完文成給事 卽接新右面高內里 頭民所報 則以爲本里 文哲式之妻高氏 仰事腐育 能盡婦道 向於乙丑獻歲 其夫質穀 出陸之路 不幸漂海 莫知死生 右女 卽欲望洋溘亡 而舅姑泣諭 以姑待生還 母絕後嗣之意 則由是寬抑 風宵祝天 發願于生對良人矣 翌年無事回遠 果生一男一女 又於辛未 其夫偶得病 將至殞命 斷指出血灌口 須臾復甦 伊時之有面報 承比嘉尚之願 今墨跡未乾是遺 至于丙子 其夫又以身病於命 殞歿之後 右女 泣辭舅姑曰 生孩入歲 足繼後嗣 妾則自比永訣矣 言訖絕粒旬餘 因爲殉節 知比卓異之行 有難泯然 拳實校報亦爲有置 噫女子有行 只不過孝烈二子 而能受舅姑之命 生男而繼後 是孝也 又因夫婿之死而同穴 是烈也 矧又指血延命 尤爲難事 女子一身 孝烈兩全 援例褒賞之典 不可但已 故同高氏 奉祀子若孫身戶之役 依法典一切躡夏之義 茲以完文成給者」

28)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5일 신사조.
『문종실록』 권4, 문종 1년 10월 30일 경자조.

서 당대의 정치적인 의도와 맞물린 예속(禮俗)의 강화나 여성들에 대한 각종 금제조치들이 어울려서 규범적 열녀상은 더욱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열녀 관념은 시대적·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사대부에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확산되어 모든 여성이 동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정절 관념은 육지부와 떨어져 유교 사상의 뿌리가 없던 제주까지 영향을 미쳐 열녀로 정려되는 기록들이 나온다. 육지부처럼 다양한 사례나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은 효자나 효녀 집안에서 열녀·효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고소락(高所樂)처럼 주인의 정절을 본받아 종신 수절하는 노비들의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항춘(李恒春)의 처이자 효자 박계곤(朴繼崑)의 딸인 박씨(朴氏)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지조(志操)와 절개(節概)를 지켰다.²⁹⁾ 그녀의 몸종 고소락 역시 주인 박씨의 정절에 감화되어 사내와 함께 거처하게 되면 그 주인을 가까이 모실 수 없다하여 평생 시집가지 않고 몸을 깨끗이 하면서 주인을 섬겼다.³⁰⁾ 정조 18년(1792) 어사 심낙수(沈樂洙)가 쓴 『효열충 정려기(孝烈忠 旌閭記)』는 그들의 열행 내용과 정절 관념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³¹⁾

임금께서 즉위하신지 18년 되는 갑인년(1794)에 제주어사 심낙수가 장계(狀啓)를 올려 말하기를, “제주인(濟州人) 박계곤(朴繼崑)과 그의 딸, 그리고 딸의 계집종 고소락(高所樂)은 효자·열녀·충비로 정려(旌閭)함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임금께서 전교(傳敎)하여 말하기를, “박계곤의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은 진실로 섬 이북에서는 보기 드문 기이한 일이다. 계곤에게 딸이 있는데 열녀이며, 열녀에게 충직한 계집종이 있으니, 효·열·충이 한데 어울어져 있으니, 어사로 하여금 박계곤을 정려하라.”하였다. 어사가 이르기를, “효자, 열녀와 충절한 종을 어찌 같은 항렬(行列)로 편액하리오 하고 그 사적을 글로 지어, 고을 사람들로 하

29) 「朴氏籍寬陽孝子朴繼崑之女適慶州李恒春忠臣高麗校理美之后早年喪夫終身守節家有賤婢日高所樂猶能孚感歿世不嫁潔身事主由是烈忠彰聞 仁廟早寅 并旌閭」(조병식, 『續修三綱錄』, 1906)

「朴氏本州嚴莊里朴繼崑之女早年喪夫終身礪節至於掃賤婢猶能孚感歿世不嫁潔身事主貞節彰聞有旌楔,高所樂朴氏婢感其主貞節若與男子同處則不可以辜時其主終身不嫁潔身事主有忠婢旌」(제주교육박물관 편·고창석 역, 『孝烈錄』, 제주교육박물관, 1996)

30) 「高所樂李恒春婢感其主朴氏守節誓不與男子同處日不可以 昵侍吾主終身不嫁事聞命閭」(조병식, 『續修三綱錄』, 1906)

31) 『효열충 정려기』 외에도 효자 박계곤에 관한 원문과 고문서는 현재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열녀 박씨와 고소락과 함께 기술된 기록 중 비교적 자세히 나온 자료는 『효열충 정려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금 그 정려 앞을 지나갈 때, 말을 탄 이는 반드시 몸을 굽혀 격식을 갖추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곳을 가리키며 길이 아름다운 풍속을 심게 하라.”고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였다. (중략) 그의 딸은 일찍이 남편을 여윈 뒤 지조를 지켰으며, 그녀의 종은 고소락이라 하는데 제주말로 머리가 더부룩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시집을 가지 않고 주인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나의 주인이 열녀인데, 내가 어찌 감히 남자와 살겠느냐며 나이 60이 되어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았다. 위에 적은 것이 효·열·충의 사적이다.

나라에서 정려를 내리는 법전은 몸을 바쳤을 때 그 실적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박군의 효성에 대한 행정은 판자가 떠밀려와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나 말 밖에는 달리 증거할 수 없고, 그의 딸 역시 충신토록 수절한 일에 지나지 않아 반드시 정려해야하는 데는 합당치 않다. 유독 그녀의 종이 죽을 때까지 시집가지 않고 지조를 지킨 일도 따지고 보면, 남녀가 함께 사는 도리는 사람의 도리 중 가장 중대한 것인데, 상전을 위하여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무너뜨린 것은 바른 이치가 아니다. 그러나 천한 노비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열행을 보고 느끼어, 기꺼이 따랐으니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어겼음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니,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하늘의 이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남녀가 가정을 갖고자하는 것은 사람의 정리인 것이다. 충성스런 노비가 죽을 때까지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버렸던 것은 진실로 열녀의 정절에 깊이 감동된 것인지 억지로 한 일이 아니다. 열녀는 시골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수절한 것은 진실로 아버지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감동되지 않았다면, 어찌 쉽게 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수절한 것은 진실로 아버지의 지극한 효성을 보고 감동되지 않았다면, 어찌 쉽게 그리할 수 있겠는가. 충성스런 노비가 열녀의 정절을 알았고, 열녀는 효자의 지극한 효행을 알았으니 감탄할만한 일이다.

성스러운 조정에서 특별히 정려를 명함은 어찌 그리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정려는 내리고 박효자의 손자 중환(重煥)이 할아버지의 훈계를 지켜 무예를 익히고 병법을 배워 구난을 당하면 나라에 보답할 사람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직첩(織帖)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섬사람들은 감탄하며 착한 일을 한데 대한 보답이라 여겨 서로가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로부터 온 섬 안 수백리에서 절행과 효행을 하는 자가 배출되어 불만한 일이 많아지니, 우리 임금의 교화가 점점 번져나갔다. 아! 아름다운 일이다.

갑인년 6월 일 순무어사가 지제조(知製敎)를 지내고 제주목사 겸 전라도 수군

방어사인 신하 심낙수가 교지를 받들어 삼가 씀.³²⁾

완문(完文)의 내용을 보면 ‘나라에서 정령을 내리는 법전은 몸을 바쳤을 때 그 실적에 의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즉 당시 여성들은 죽음을 통해 열녀로 정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열녀 박씨, 고소락처럼 종신 수절하는 것 역시 죽을 못지않은 열행이라 여겨 정령을 하였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열녀 박씨와 고소락 뿐만 아니라, 하용우(河龍雨)의 처 윤씨(尹氏) 또한 남편과 사별 후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시부와 어린 자식들의 봉양을 위해 종신 수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씨의 이런 정절을 높이 본받아 그의 자손들도 효자, 효부로 천거되었다. 윤씨의 비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씨는 본관이 파평인데 사인 윤운련의 딸이며, 진주인 하용우의 처이다. 매양 한 가지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받들어 순종하고 어기는 일이 없었다. 이웃 마을에 귀화한지 겨우 삼십여 세에 갑자기 남편이 죽자 성이 무너지는 통곡으로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마음을 돌이키어 잘못을 바로 잡고 시아버지를 받들고 어린 것을 달래면서 시아버지 공양에 정성을 다하여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하였다. 아들 영진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받들어 효도를 다하였고 어머니의 병환에는 곁에서 약 시중을 들며 정성을 다하였고 약을 구하기 위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돌아가시자 밭을 구르며 통곡하여 거의 실성하기에 이르렀다. 손자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없지 않았다. 장손부는 광산 김기혁의 딸로서 시아버지가 병이 들자 의원을 부르고 약을 드리며 효성을

32) 심낙수, 『忠孝烈 旌閭記』(1794), 「上之十八年 甲寅 濟州御使 臣 沈樂水 奏 狀言 州人 朴繼崑 其女 朴 婢 高所樂 孝烈忠 宜有旌異之典 上教若曰 朴繼崑之感天孝誠 誠島以北 聞奇哉 繼崑又有其女之爲烈婦 烈婦又有忠婢 孝烈忠共萃 令繡衣繼崑之閭 旌之日 孝子烈女 低一行扁 忠婢之名 仍撰記蹟之丈 俾州人過其閭乘者必式行者之點 爲百代樹風聲 命下 州人相與咨嗟太息曰 吾州遠王化 俗荒陋 爲人所鄙 今有可辭於海之北 曠古恩榮 朴氏豈專有也 鼓舞興起 臣既奉命旌閭 敘次爲文 謹按 朴繼崑 州椽吏事父至孝 赴京 敗船中洋 僅泊無人孤嶼 取破板書訣語 寄父縱之海流 距州水路九百里 未終日板到門前海岸 父得之 發輕舟往救 庚子大喪 倡率島民 越海負土 其女朴 早喪夫 守志 朴有婢 名高所樂諺謂髮鬆上捲 因名也 誓不嫁 守其主日吾主有烈行 吾不敢與男子處 六十年至老死不懈 此其孝烈忠實跡也 國典旌異 多在殉身 亦皆據實跡 如朴君者 跡其行 不過日板泊孝感 餘無考據其女亦不過日 守寡終身 未必合於旌典 獨婢之老死不嫁 有過人之操 而男女之倫大矣 爲主廢倫非正理也 然使賤婢 忽然起感 於不知不覺之中 心悅誠服廢倫 不知其使之然者 豈非至誠之所感 而天理之所存耶 男女之願有室家 人情之所固然 忠婢之沒身廢倫 苟非烈女貞節之所深感 則有非強勉者 而烈女之生於委巷 青年守節 苟非觀感於其父之至孝 則亦豈易也 以忠婢而知烈女之貞節 以烈女而知孝子之至行 吁其感矣 聖朝特命旌典 豈無以也 既命旌 上聞 孝子孫重煥 守祖戒 習兵學 以爲當難報國之資 特命授職 島人又聳歎 以爲爲善之報 相與激勸爲善 從此環島百里 節孝輩出 彬彬可觀 以責我聖祖 漸被比屋之化矣 於乎休哉 甲寅 六月 日 巡撫御使 原任知製教 行濟州牧使 兼全羅道水軍防禦使 臣 沈樂洙 奉教謹記」

다하여 효부됨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한 집안에 삼대에 걸쳐 효부 효자가 있었으니, 마땅히 작설하여 그 집을 표시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웃에서 그 표창을 천거하여 마침내 완문을 받았으므로 이에 비각을 세워 영원히 빛내고자 한다. 사적은 오륜록(五倫錄)에 실려 있다.³³⁾

가족 구성원의 효행과 열행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래 사료의 통정대부 고정언(高廷彦)의 처 장씨(長氏)처럼 남편에게 열을, 시모에게 효를, 임금에게 충을 다하여, 삼덕을 지녔다고 천거되어 포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씨의 본관은 인동이며 현종 6년(1840)에 태어났다. 어려서는 효행이 있었으며 자라서는 탁절이 있었다. 남편의 병이 오래 지속되므로 하늘에 자기 몸으로 대신하기를 기원하였으나 하늘이 목숨을 연장해 주지는 못했다. 슬픔과 서러움에도 지나쳤으나 늙은 시어머니가 계셨으므로 효성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고 돌아심에 미쳐서는 한결같이 예제를 따랐다. 정미년(1907)의 국용대에는 옷을 팔아 돈을 기부했다. 이는 남편에게는 열이고 시어머니에게는 효이며 임금에게는 충이다. 광무 11년(1907)에 마을에서 천거하니 이를 포양하였다. 아 삼덕을 온몸에 지녔으니 오직 여장부의 풍토가 아니라.³⁴⁾

그리고 아래 사료의 학생 김광삼(金光三)의 처 최씨(崔氏)처럼 비현실적인 열행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씨는 남편과 사별 후 시부모 봉양이 극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시아버지의 기일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가 평을 치어 떨어진 것을 잡았다는 내용이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하나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여성의 정절 관념을 칭송하기도 한다.

33) 처사 하용우의 처 윤씨 비석(1946년 건립, 소재지: 한경면 대립리 1973-1번지)

앞면 「處士河龍雨妻 孝烈尹氏之閭」

뒷면 「氏籍坡平 士人尹公應連女 晉州人河龍雨之妻也 無異事親 承順無違 隣里歸化年裳 餘 奄<得不死> 崩城之痛 卽欲從徇 轟然改俗 奉舅撫幼 克誠<養舅> 於夫在日 有子永進 奉母盡孝 母病侍湯 嘗藥□□ 嘗無所不至 及喪哭踊 幾至滅性 有孫三人□□□ 無非孝友 長孫婦光山金氏箕嬭之女 嘗舅<得病>□ 養醫進藥 極盡孝誠 無愧爲孝夫也 一門三<孝婦子> 宜有綽楔表宅 鄉隣薦彰 終受完文 故茲立碑□□閣 以圖不朽之意 事載五倫錄」

34) 통정대부 고정언의 처 장씨(건립연대 미상, 소재지: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앞면 「通政大夫高廷彦 忠孝烈張氏之閭」

뒷면 「氏仁同人也 憲宗庚子生 幼有孝行 長有卓節 其夫病延 祈天身代 天不假年 哀戚過度 老姑在堂 孝無不至 及其命終 一從禮制 丁未國用 賣 捐金 寔爲烈於夫 孝於姑忠於君也 光武十二年 本面□ 州牧使加褒揚 噫 三德已全 惟非女士之風焉 改造麗文」

최씨의 본관은 경주이다. 시집 온지 6년에 종득, 종언 두 아들 둘을 두었으나 면의(免依)에 미치지 못하여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 슬퍼함이 제도에 지나쳤고, 시부모가 계셨으므로 효도와 봉양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예제(禮制)를 극진히 하였으며, 시아버지의 기일에는 찬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마음이 답답하였으나 물을 길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매가 썰을 치어 갑자기 신 앞에 떨어뜨리므로 잡아서 조전(助奠)하니, 마을 사람들이 다 효성이 지극한 소치라 하였다.

지난 도광(道光) 임오(壬午), 즉 순조 22년(1822)에 어서가 그 탁행을 가상히 여겨 완문을 내려 보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그 자취가 사라져 없어질까 염려 되어 이에 작성을 세운다.³⁵⁾

조선시대 여성의 주요한 임무를 살펴보면 딸로서는 효를, 며느리로서는 집안의 화목 도모를, 아내로서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어머니로서는 자녀 교육을 제일로 강조한다. 이처럼 유교적 여성관으로 규정된 정절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사회에서 보편화, 내면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한 맥락을 담당하게 된다.

35) 학생 김광삼의 처 최씨 비석(1822년 건립, 소재지: 한림읍 귀덕1리 창낭거리)

앞면 「學生金光三妻 孝烈崔氏之閭」

뒷면 「氏慶州后人也 于歸六年 二子種得種彥 未急免依 所天奄逝 哀毀逾制 舅故在堂 孝養尤篤 及其丁憂 極盡禮制 其舅忌日 饌未具 心焉 出汲歸路 蒼鷹搏雉 忽墜履前 拱而助奠 鄉人咸稱 孝誠極致 去道光壬午 慰諭御史 嘉其卓行 下送完文 世遠年久 念其泯跡 茲立棹楔焉」

Ⅲ. 조선시대 제주 열녀의 실태

1. 제주 열녀의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지(耽羅志)』, 『효열록(孝烈錄)』,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등에 기록된 127명의 제주 열녀에 대하여 신분·시기·지역·유형별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신분과 시기별 열녀 분포

(1) 열녀의 신분추정원칙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조선왕조실록』, 『제주읍지』, 『탐라지』, 『효열록』, 『속수삼강록』 등에 기록된 127명의 제주 열녀를 토대로 신분을 추적해나갔다.

이중 열녀의 신분이 나타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 부의 직역과 남편의 직역으로 그 신분을 추정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 보통 남편이나 아버지의 직역을 통해 그 신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부녀자들은 신분에 관한 언급이 특별히 없어도 그 칭호만으로 대체적인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녀자의 칭호는 양반은 ‘모갑처모씨(某甲妻某氏)’라고 하고 서얼과 평민은 ‘모갑처모소사(某甲妻某召史)’라고 칭하며, 천민의 부녀자는 성(姓)을 칭할 수 없고, 이름만을 쓸 수 있었다.³⁶⁾

그러나 실제로 열녀의 신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녀자의 호칭인 氏, 姓, 召史

36) 이정주, 「조선시대 貞節 倫理의 실천자의 身分」 『역사민속학』 제24호(역사민속학회, 2007), 108쪽.

만 나타나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직역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신분을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천민 강창백(姜昌白)의 처 유진(有眞)의 경우 『제주읍지』에 양녀로 기재되어 있고,³⁷⁾ 『증보탐라지』에는 천민으로 기록되었다.³⁸⁾ 이 경우 부녀자의 이름이 정확히 나타나고, 남편의 직역을 기준으로 하여 천민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사료마다 같은 인물인데 호칭이 다르게 기재되거나³⁹⁾ 남편이나 부의 신분이 중인이나 상민인데도 부녀자의 호칭을 氏라 기록된 사례도 있다.⁴⁰⁾

그 외의 대다수의 경우 아무개의 처 모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이나 부의 직역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물론 氏라는 부녀자의 호칭으로 미루어보아서는 양반층이긴 하지만, 남편이나 아버지의 정확한 직역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이 경우는 미상으로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비석 자료를 보아도 천민 신분으로 열녀가 된 고소락(高所樂)과 국지(國只)의 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비의 여성 호칭을 氏라고 하고 있어, 여성의 호칭으로만 그 신분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조선시대 열녀의 신분을 추정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기존의 신분제 연구의 일반론과는 달리 양인이면서 氏의 칭호를 붙인 사례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2) 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 양상과 특징

위의 신분추정원칙을 기준으로 『조선왕조실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등에 기록된 제주 열녀 127명에 대한 신분을 추정하여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총 127명 중 40.14%인 51명이 양반으로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상민(9.447%), 천민(7.87%), 중인(2.3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37) 『濟州邑誌』, 「良女有眞卽寺奴昌白之妻早」

38) 「姜有眞 郭支里人이니 寺奴 金昌伯의 妻라」(제주문화원 편, 『增補 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

39) 『순조실록』 권19, 순조 16년 6월 8일 병진조, 「濟州 儒生 田衡元 妻 梁氏 儒生 吳隆復 妻 金氏 吏 孫處權 妻 朴姓」
「朴氏 州史 孫處權의 妻라」(제주문화원 편, 앞의 책.)

40) 「周氏 楮旨里人 防軍 高學常의 妻라」(제주문화원 편, 앞의 책.)

<표 1> 제주 열녀의 신분별 분포⁴¹⁾

신 분	인 원(%)
양반	51(40.15)
중인	3(2.36)
상민	12(9.44)
천민	10(7.87)
미상	51(40.15)
합계	127(100.00)

양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아래로 상민, 천민, 중인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데 양반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리고 신분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미상으로 처리된 열녀들 가운데 그 행적들을 보면 중인, 상민 신분에 해당하는 열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인, 상민의 열녀 비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다른 지역의 읍지에 기록된 열녀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신분별 열녀 분포 양상과 전체 열녀 중 양반 비율을 살펴보면 진주의 경우 『진양지(晉陽志)』에 기재된 열녀 기록을 보면 전체 열녀의 57.77%가 양반이고, 그 다음은 중인(15.55%), 천민(13.33%) 순으로 나타난다. 경상도 선산 지역은 『일선지(一善志)』에 기재된 열녀 기록을 보면 전체 열녀의 58.62%가 양반이고, 중인·상민·천민이 같은 비율(6.89%)로 분포하고 있다. 경상도 상주 지역의 읍지인 『상산지(商山誌)』 효열조에 기재된 열녀 기록을 보면 양반이 전체 열녀의 70.58%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상민 23.52%, 천민 5.88%의 비율로 분포한다.⁴²⁾

41) <표 1>은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42) 조선 중기 경상도 열녀의 신분 분포

『晉陽志』(1622~1632)		『一善志』(1630)		『商山誌』(1617)	
신 분	인 원	신 분	인 원	신 분	인 원
양반	26	양반	17	양반	12
중인	7	중인	2	중인	-
상민	-	상민	2	상민	4
천민	6	천민	2	천민	1
미상	6	미상	6	미상	-
계	45	계	29	계	17

조선 중기의 경상도 세 지역만을 살펴보았지만 진주, 선산,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 모두 전체 열녀의 과반수 이상이 양반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유교적 환경 속에서 자란 양반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물론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제주 사회의 양반 지배 세력이 한반도 전체에 비해 약했지만, 제주지역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사람들의 지속적인 유교 교화를 통해 열녀로 정표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열녀 정표자 중 양반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천민층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48년(1772) 기록을 보면

뛰어난 사대부는 정표(旌表)하는 데 뽑히지만, 세력이 없는 소민(小民)은 비록 탁이한 기절(氣節)이 있어도 상물(賞物)을 주는 데 뽑히니, 정표가 어찌 그 사람을 따르는가? 해조(該曹)에 특별히 신칙해서 매년 세수(歲首)에 이 단자(單子)를 받아들이되, 맹삭(孟朔) 말에 차대에 입시할 때 종백(宗伯)이 가지고 와서 아뢰어 취사(取舍)하게 하라.⁴³⁾

정표하는데 있어서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정려 포상함에 있어 정표와 상물에 차이를 두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2>는 시기별 제주 열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를 보면 정확한 정표시기를 알 수 있는 열녀는 127명 중 46.45%인 59명이다. 정표시기가 드러난 인물 중 태종 13년(1413)에 정표된 직원 석방리보개의 처 정씨처럼⁴⁴⁾ 고려시대 인물도 있다.

<표 2>를 보면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그 수가 적으나 18세기부터 급격히 그 수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기로 내려갈수록 유교가 지방까지 넓고 깊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박주,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국학자료원, 2000) 내용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 함)

43) 『영조실록』 권118, 영조 48년 11월 25일 신유조, 「表表士夫則抄於旌表, 無勢小民則雖有卓異之節, 抄於賞物, 旌表何隨其人乎. 另飭該曹, 每歲首捧此單, 孟朔末次對入侍, 宗伯持奏, 以爲取舍」

44) 『세종실록』 권 42, 세종 10년 10월 28일 병오조, 「旌義, 人職員 石阿甫里介 妻 無命, 年二十而嫁, 居九年夫死, 無子無父母奴隸, 甘心窮餓, 求婚者衆, 終不改節」

<표 2> 제주 열녀의 시기별 분포⁴⁵⁾

시 기	인 원(%)
15세기	2(1.57)
16세기	1(0.78)
17세기	2(1.57)
18세기	13(10.23)
19세기	31(24.40)
20세기	11(8.66)
미상	67(52.75)
합계	127(100.00)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신분 질서가 중요하기 시작하면서 봉건적 지배층들은 그들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흐름을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규제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제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정려(旌閭)를 통하여 유교적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지방단위에서도 향촌사회의 질서 회복을 위해 전력하고자 했다.⁴⁶⁾ 게다가 당쟁으로 자파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스승이나 조상의 업적을 미화 과시하려는 풍조의 심화로 인해 후기로 갈수록 열녀에 대한 포상이 많아졌다.⁴⁷⁾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유교가 정착된 조선사회에서 국가적인 정책과 가문의식의 결합으로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⁴⁸⁾

조선의 유교가 정착된 시기를 17세기로 보았을 때, 열녀 또한 이 시기부터 급

45) <표 2>은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46) 16, 17세기에는 조선 전기와 달리 각 지방단위로 守令과 士族을 중심으로 한 私撰邑誌들이 전국에 걸쳐 편찬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이 사찬읍지들에서는 무너진 사회질서의 복구와 안정을 위하여 忠, 孝, 烈 등의 敎化的 性格을 강조하였다. (박주, 앞의 책, 49쪽).

47) 이희환, 「조선 말기의 旌閭와 家門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 제17호(조선시대사학회, 2001), 143쪽.

48) 17세기에는 예를 절대시하는 의식의 영향으로 문벌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선조의 행적을 밝혀 정표를 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가문 위주의 정표도 많았으므로 인조, 효종대에는 정표자의 진위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정표를 청하는 상소 등 자손의 上言으로 인한 정려포상 사례가 적지 않았고 자손의 남성으로써 정표가 더욱 쉽게 주어질 수 있었다. (박주,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 제20집,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83~104쪽).

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주는 육지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 1세기 정도 늦은 18세기부터 열녀로 정표된 자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표 1>과 <표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주 열녀의 신분과 시기별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제주 열녀의 신분·시기별 분포⁴⁹⁾

시기 \ 신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 계
양반	1	-	-	5	17	8	31
중인	-	-	-	2	1	-	3
상민	-	-	1	2	8	-	11
천민	-	1	1	4	2	-	8
미상	1	-	-	-	3	3	7
합계	2	1	2	13	31	11	60

18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열녀 정표자들은 19세기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다. 있다. 19세기 정표자의 신분은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사족의 급증과 상대적인 하층민의 격감현상은 신분제 붕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 열녀 전체 추이와 비교해봤을 때 제주지역 역시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의 정절 숭배 이데올로기가 강해졌고, 정절 이데올로기는 후기로 갈수록 양반층에게 독점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⁵⁰⁾

49) <표 3>은 『속수삼장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50)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나타난 열녀의 신분분포

신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합계
양반	74(57.8%)	887(75.6%)	959(73.8%)
중인	7(5.5%)	20(1.7%)	27(2.1%)
상민	35(27.3%)	188(16.1%)	223(17.2%)
노비	6(4.7%)	55(4.7%)	61(4.7%)
미상	6(4.7%)	23(2.0%)	29(2.2%)
합계	128(100%)	1,171(100%)	1,299(100%)

조선시대 열녀의 73.8%인 959명이 양반 신분으로 양반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중종대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여지도서』는 대체로 18세기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조선후기로 가면서 양반층의 열녀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상민층의 열녀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주, 『조선시대 貞節 倫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

또한 육지부에서 전쟁과 각종 민란 때 열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세기 제주 지역에 일어났던 민란과의 연관도 유추해볼 수 있겠다. 물론 열녀의 기록에서 직접적으로 민란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조선후기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민란이 일어났던 시기인 19세기는 제주 열녀가 그 이전인 18세기에 비해 정표된 사람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정표자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구별 없이 포상되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포상자의 신분이 대부분 양반층이었다. 양반층은 성리학적 윤리이념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신분제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사례보다 높은 사람들의 사례가 우선적으로 보고되었으며 피지배층의 부녀자보다 지배층의 부녀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절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¹⁾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적 윤리이념이 피지배층에 널리 보급되어 피지배층에도 열녀의 비중이 높아진다.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제도 변화이다. 우선 신분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15세기의 양천제에서 16세기로 들어오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으로 변화하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양반 계층의 신분은 분화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한다.

서열도 신분이 상승되어 납속을 이용하여 관직에 진출하며, 영·정조 때 집단 상소로 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 받게 된다.

가족제도의 변화로는 혼인을 들 수 있는데, 17세기 이전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에서 유교적인 친영제(親迎制)가 정착되어 부계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양자와 부계위주의 족보와 동성 마을이 형성되었고, 성리학적 윤리를 강조하여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였고, 효자·열녀의 표창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자녀들의 상속은 차별을 가져왔으며, 처족이나 외족의 차별도 생겼다. 효적도 남자의 집에만 오르게 되었으며 적장자위주의 상속과 장자봉사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후 19세기에 들어오면 열 윤리는 더 이상 상층 문

민속학』제24호, 역사민속학회, 2007, 111~113쪽.)

51) 박주,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국학자료원, 2000), 73쪽.

화의 전유물이 아닌 하층 문화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상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열녀가 하층의 일반 평민이나 심지어 천민에게까지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반가문의 여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조선시대 모든 여인들의 미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중심에는 열 문화를 확대시킨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시대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

조선시대 제주의 행정구역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세 개의 고을로 나뉘진 삼읍체제(三邑體制)였다. 이 삼읍체제는 한말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행정개편이 이뤄지는 1914년까지 약 500년간 유지되었다.

유림들은 각각 제주향교·정의향교·대정향교를 중심으로 그들의 힘을 결집했고, 주민들의 경제권·생활권·혼인권 등은 기본적으로 이 세 고을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와 문화는 제주·정의·대정이라는 문화권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⁵²⁾

<표 4> 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⁵³⁾

지 역	인 원(%)
제주목	46(36.22)
대정현	8(6.29)
정의현	14(11.02)
미상	59(46.45)
합 계	127(100.00)

조선시대 제주 삼읍별 열녀 분포를 나타낸 <표 4>를 살펴보면 제주목이 36.22%인 46명, 정의현이 11.02%인 14명, 대정현이 6.29%로 8명이다.

세 지역이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제주목

52) 김동진, 「조선시대 전기」 『제주도지』 제2권(제주도, 2006), 339쪽.

53) <표 4>는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이 정의현과 대정현을 포함한 제주 지역을 총괄하였고, 인구나 규모면에서도 가장 컸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이 <표 5>이다. <표 5>는 <표 2>와 <표 4>를 하여 지역·시기별 열녀 분포를 나타낸다.

<표 5> 제주 열녀의 시기·지역별 분포⁵⁴⁾

시기 \ 지역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합 계
15세기	-	-	1	1(1.47%)
16세기	1	-	-	1(1.47%)
17세기	1	-	-	1(1.47%)
18세기	8	2	3	13(19.11%)
19세기	17	4	7	28(41.17%)
20세기	9	-	-	9(13.23%)
미상	10	2	3	15(22.05%)
합 계	46(67.64%)	8(11.76%)	14(20.58%)	68(100.00)

127명이 열녀 중 정확히 지역이 드러나는 열녀는 53.54%인 총 68명이고, 정표 시기가 정확히 드러나는 열녀는 60명⁵⁵⁾이다. 제주목은 16세기부터, 정의현은 18세기부터 열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지역은 18세기부터 열녀 수가 전체적으로 급증하였다. 마을별 분포에서 특이한 점은 18세기에서 19세기는 열녀로 정표된 자가 마을별로 약 2배씩 증가하는 반면, 조선 말기에 오면 제주목에서만 열녀 정표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54) <표 5>는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55) <표 2> 참조.

2. 제주 열녀의 열행 분석

1) 열행의 의미와 분류

조선시대 열(烈)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행(行)이 함께 뒤따랐고 이 행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몸에 의해서였다. 몸은 예(禮)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⁵⁶⁾

열행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동원하여 열행의 실현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행은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인 열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즉 여성의 몸은 열이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수행하는 물질적인 근거이다. 고도의 정신적인 가치인 열을 자신의 몸이라는 물질적인 매개를 통해 실현하는 열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 후기,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남편이 죽은 후 자식이 없고 시부모를 모실 형제가 있거나 후사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결은 남편 사망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세월이 경과하여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어떤 경우 시부모와 형제들의 요청으로 남편의 상례를 마칠 때까지 자결하는 것이 연기되고, 때로는 어린 자식이 있어 바로 자결하지 않다가 아이마저 죽게 되면 즉시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도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열행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18세기 이후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 사료를 통해서 단지(斷指)와 같은 행동을 수차례 찾아볼 수 있고, 비슷한 형태의 열행이 반복되면서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행동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패턴화되는 열행의 유형을 수절형, 자결형이라는 큰 분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56) 정지영, 「열녀 만들기의 역사」 『여성학논집』20(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2003), 141쪽.

2) 열행 사례 분석

사료에 기록된 열녀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분·지역·정표시기 등이 누락이 된 경우가 많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그들의 열행에 대해선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총 127명의 열행 행적을 분석해보면 수절이 90명(70.86%), 자결이 37명(29.13%)으로 나타난다.

<표 6> 제주 열녀의 유형별 분포⁵⁷⁾

유형	인원(%)
수절형	90(70.86)
자결형	37(29.13)
합계	127(100.00)

열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자살이 떠오르고,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자결을 통해 열녀로 정표되었다. 유교가 정착화된 사회일수록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열행인 자결형 열녀의 비율이 높다. 다시 말하면, 제주지역은 수절형 열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부장적 정절 이데올로기와 유교 사상이 육지부에 비해 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절과 자결이란 분류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이고, 대부분의 열녀의 열행들은 여러 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즉 남편이 병들어 단지(斷指)나 할고(割股), 상분(嘗糞) 등과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 혹은 훼손시키며 간호하고 남편 사망 후 자결을 한다. 부양할 가족 때문에 자결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수절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 사망 후 수절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거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어머니로써 며느리로써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 후 자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유형들을 표로 작성한 것이 <표 7>과 <표 8>이다.

<표 7>은 수절형 열녀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단순 수절형이

57) <표 6>는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67.77%로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복합형 열녀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합형은 ‘단지수혈+수절형’과 ‘자결시도+수절형’이다. 그 외에도 손절단, 상분(嘗糞), 머리카락 자름, 자결시도 등의 신체 훼손과 수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7> 수절형 열녀의 세부 유형별 분포⁵⁸⁾

대유형	세부유형	인 원(%)
단순형	수절(시부모 부양 포함)	61(67.77)
	소계	61(67.77)
복합형	단지수혈+수절	8(8.88)
	단지수혈+자결포기+수절	1(1.11)
	상분+수절	2(2.22)
	상분+자결시도+수절	1(1.11)
	머리카락 자름+수절	1(1.11)
	손 절단+수절	1(1.11)
	재가권 유물리침+수절	5(5.55)
	자결시도+수절	10(11.11)
	소계	29(32.33)
	합 계	90(100.00)

상분(嘗糞)은 변을 맛보는 것이다. 과연 그 옛날에 변을 맛보고 그 증세를 알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분은 열행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받아들여지는 행위조차 여성의 몸을 통해 구체적인 열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분이 고통을 수반하고 행하기 어렵긴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고통과 신체에 해를 주는 것은 단지(斷指)와 할고(割股)⁵⁹⁾이다. 이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위는 수없이 반복된다. 이는 여성의 신체 훼손이 남편에

58) <표 7>은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59) 할고(割股)는 허벅지 살을 잘라서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할고 역시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의 열녀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열행이지만 제주지역 열녀에서는 이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대한 지극한 희생과 순종으로 의미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여성의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나면, 여성들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며 그 자신도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고 남은 의무를 이행한 뒤 자결함으로써 열행을 실천한다.⁶¹⁾

<표 8>은 자결형 열녀를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표 8> 자결형 열녀의 세부 유형별 분포⁶²⁾

대유형	세부유형	인 원(%)
단순형	남편 제삿날 자결	3(8.10)
	목매어 자결	7(18.91)
	3년상 치른 후 자결	1(2.70)
	소상 때 자결	1(2.70)
	아들 사망 후 자결	1(2.70)
	남편 장례 후 자결	5(13.51)
	절식 자결	4(10.81)
	투신 자결	4(10.81)
	시부모 사망 후 자결	1(2.70)
	자결(사유 미상)	5(13.51)
	소계	32(86.48)
	복합형	단지수혈+아들 성장 후 자결
단지수혈+투신 자결		1(2.70)
단지수혈+절식자결		1(2.70)
단지수혈+자결(사유 미상)		1(2.70)
절식+목매어 자결		1(2.70)
소계		5(13.51)
합 계	37(100.00)	

단순형 열녀는 사망 후 자결하는 것으로 사별 후 바로, 장례 후, 제삿날, 3년상

60) 홍인숙, 『조선시대 열녀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3쪽.

61) 홍인숙, 앞의 논문, 58쪽.

62) <표 8>은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담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치른 후 또는 아들이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임무를 마친 뒤 자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복합형인 경우는 보통 신체훼손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 단지 수혈, 절식 등의 행위가 제주 열녀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단지 행위는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나 시부모의 병간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열행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 단지 행위가 병을 낮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의문이나 말이 쉬워 단지이지,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에서 늘 배제되어 있는 것은 열행을 실천하는 여성의 고통이다. 이러한 점은 역사적인 사료는 물론이고, 구비설화 속 열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절식은 강력한 자기 의지의 표출이다. 이런 본능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남편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수절형과 자결형 열녀가 신분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이 <표 9>이다.

<표 9> 제주 열녀의 신분별 유형 분류⁶³⁾

신분 \ 유형	수 절	자 결
양반	32(35.55%)	19(51.35%)
중인	1(1.11%)	2(5.40)
상민	8(8.88%)	4(10.81%)
천민	6(6.66%)	4(10.81%)
미상	43(47.77%)	8(21.62%)
합 계	90(100.00%)	37(100.00%)

먼저 수절형 열녀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반(35.55%), 상민(8.88%), 천민(6.66%), 중인(1.11%) 순으로 나타난다. 자결형 열녀 역시 양반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63) <표 9>은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있고, 그 다음을 상민, 천민, 중인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9>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자결이라는 열행이 양반층에서 과반수이상 나온다는 점이다. 즉 양반층일수록 가장 적극적인 열행인 죽음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시기별로 수절형과 자결형 열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수절형 열녀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여성들은 특별히 꼭 죽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조선은 전란의 가져온 총체적인 변화의 상황 속에 있었다. 봉건제도의 모순이 첨예화되어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중세적 질서 자체가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⁶⁴⁾

<표 10> 제주 열녀의 시기별 유형분류⁶⁵⁾

시 기 \ 유 형	수 절	자 결
15세기	1(1.11%)	-
16세기	1(1.11%)	-
17세기	2(2.22%)	-
18세기	5(5.55%)	8(21.62%)
19세기	17(18.88%)	14(37.83%)
20세기	8(8.88%)	3(8.10%)
미상	56(62.22%)	12(32.43%)
합 계	90(100.00%)	37(100.00%)

지금까지 제주지역 열녀를 수절과 자결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열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절과 자결이라는 한 가지 유형보다는 신체훼손과 함께 복합적으로 열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절은 단순히 성적·육체적 순결만이 아닌 사회적 의무 개념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이다. 즉 사별한 부녀자들은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한평생을 보낸 여인들의 삶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부녀자의 수절은 시부모를 위한 경우

64) 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烈女の 죽음과 虛構性』(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0쪽.

65) <표 10>은 『속수삼강록』, 『조선왕조실록』, 『중보탐라지』, 『효열록』을 참고로 표 작성.

가 대부분이다.

당시 여성들은 시부모 봉양이 수절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는 결국 여성으로 하여금 한 남편에게 전 생애를 바치도록 강요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남성중심의 가족 질서 확립의 방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결은 가장 적극적인 열행이다. 충절을 위한 자기희생은 실제로 여성들에게만 강요된 도덕적 의무였던 것이다.

존재를 부정당하고 산 인생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가문과 자손의 출세를 위하여 죽는다는 명분과 죽는 그 순간은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발휘하는 짧은 존재감을 느끼며 죽음을 결심한 것이다.⁶⁶⁾

사회는 열녀의 죽음을 ‘도덕적’이라 규정되어갔으며, 여성의 죽음은 수많은 또 다른 여성들의 자결에 영향을 미쳤다.⁶⁷⁾ 구체적인 자살 행위에 붙여진 ‘도덕적’이라는 칭호는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가해자나 과부들의 평생 수절 또는 남성들의 충성과 같이 사실상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적인 행동 유형을 조장하려는 사람들이 사후에 규정한 것이다. 물론 도덕적 지지가 그 사람들을 그런 결정에 이르도록 유도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살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는 아니다. 자살이 발생한 그 사회를 도덕적 견지에서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가 어떻게 자살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가 하는 점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후에는 자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이다.⁶⁸⁾

자살은 인간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단순히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하는 비극적인 일이 잔인한 동시에 비인간적이게도 다른 사람에 의해 권장되고 칭찬받는 행동으로 바뀌어갔다는 점이다.

모성이라는 것은 여성의 본능이다. 그리고 조선사회는 일종의 정형화된 어머니에 대한 판타지가 있던 사회였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열녀 가운데 이런 모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갓난아기를

66) 황현주, 앞의 논문, 45쪽.

67) 전여강, 『공자의 이름으로 죽음 여인들』(예문서원, 1999), 100쪽.

68) 전여강, 앞의 책, 15쪽.

놔두고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을 보면 어머니로서 자신의 책무를 간과한 행동이다. 이렇듯 열녀 사례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늘 이해해오면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덕목과 거리가 먼 요소들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열녀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권장된 자살이다. 한 사회가 공개적으로 자살을 유도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사회가 얼마나 잔혹한가를 반증한다. 남성들은 방조자로서 여성들의 죽음을 부추겼으며 이 권장된 죽음이 한 여성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된 죽음으로 바뀌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오히려 정숙함, 유순함 등의 미덕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부녀자들이 열 윤리 실천하게 되는 배경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열녀의 열행 배경과 같지만 어떤 행위를 열행으로 판단하는지의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열행의 양상도 바뀌게 된다. 즉, 조선 전기에는 남편의 죽음 이후 평생을 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행위가 열행으로 판단되지만, 조선 후기에는 수절하는 행위는 열행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남편을 따라 죽는 행위가 진정한 열행으로 판단되었다.

즉 조선후기의 변모한 시대의식과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자결하는 여성이 많았다.

IV. 제주지역 열녀의 특징과 사회적 의미

1. 제주 열녀의 특징

열녀는 조선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육지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열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바다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열녀 사례에 등장하기도 한다.

우선 표류와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남편과 사별한 후 열녀로 정표된 여성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열녀 김씨는 효자 김치화(金致和)의 딸로서 윤방언(尹邦彦)의 처이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벼슬을 구하고자 서울로 가던 중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일본으로 표류하였다가 죽었다. 김씨는 8세의 어린 것을 데리고 반구(返樞)하기 위해 동래부(東萊府)로 가서 공소(控訴)하니 일본에 공문을 보내고 부자(父子)의 시체를 찾았다. 운구하였다가 선영 밑에 장사지내니 사람들이 감탄하여 천거하였다.⁶⁹⁾

(2) 비인 천덕(天德)⁷⁰⁾은 일찍이 그 남편을 잃고 슬픔과 정성을 다하여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고, 삼년 후에도 삭망 제사를 지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와 재산을 탐내거나, 혹은 관가에 들켜 곤장으로 위협하기도 하거나, 혹은 그의 부친을 설득하여 이익으로 유인하기도 하였으나, 죽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여 머리를 깎음에 이르렀다. 목을 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 평생을 수절

69) 「金氏 本州人 尹邦彦의 妻라. 그 父가 邦彦으로부터 求仕하기 爲하여 出陸하다가 中流에서 遇風하여 日本에 漂流하여 死한지라. 金氏가 返樞次 8歲 孤兒를 率하고 東萊府에 往하여 控訴하니 日本에 移關하여 父子屍體를 安奉歸來항 先塋下에 葬하다.」(제주문화원 편, 『增補 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

70)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冥小乘)』의 「천덕전」을 보면 '천덕은 남쪽 거친 땅의 하녀(下女)일 뿐이다. 농사일을 일삼으니 여찌 여자를 가르치는 규범을 익혔겠는가. 그러나 그 일심(一心)으로 남편을 섬기고 절개와 지조가 두드러져서 있음이 심상한 자 가히 빗대어 논할 바가 아니다. 이 여찌 천부된 자질이 순정(純情)하여, 배우지 아니하여도 능함이 아니라. 성선지설(性善之說)은 더욱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호라! 세상에 이른바 남자라는 자가 하나의 이해관계를 사이에 놓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 친구간에도 서로 배신하기에 이른다. 크게는 나라의 정치가 어려운 때나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때에 나라를 팔아먹는 자도 있고, 아버지를 저버리는 자도 있다. 그 천덕에게 죄인이 되지 않을 자가 적으리이다. 거히 슬픈 일이다.'라 기록되어졌다.

하였다. 만력 5년(선조 10, 1577)에 정문(旌門)을 세웠다.⁷¹⁾

(3) 씨의 본관은 청주이며 좌시언의 딸이다. 일찍이 시집을 오면서부터 능히 부도를 지키고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며 남편을 공경하여 안팎으로 집안을 잘 꾸려 온 마을에 모범이 되더니, 고종 을미(32년 1895)에 남편이 장사하러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어 죽었으나 그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였다. 좌씨는 하늘에 호소하고 바다를 돌며 같이 죽기로 맹세하였으나 마음을 돌이켜 잘못을 바로 잡았다. 시부모가 계시고 어린 것이 의탁할 데가 없었으므로 연변에 제단을 쌓고 하의와 동복을 새로 만들어서 단 앞에서 태우며 예절을 극진히 하였으니, 이와 같은 탁행은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면리에서 연유를 갖추어 가상히 여기고 완문을 만들어 주었으며 삼강록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고 풍속이 변하면 문헌도 없어지기 쉬우므로 불초자가 진심으로 작설을 세워 성대한 은전을 표하고 열행이 영원하기를 바라노라.⁷²⁾

사료 (1)의 윤방언(尹邦彦)의 처 김씨(金氏)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표류하여 사망하자 일본까지 가서 부자(父子)의 시체를 운구해 장사를 지내니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여 천거하여 열녀로 정표되었다.

사실 당시에 제주지역에서 표류는 연중에 수없이 이루어졌다. 고기를 낚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하는 경우가 있고, 공물(貢物) 호송이나 행상(行商)을 목적으로 육지를 왕래하건, 도내(島內) 연안을 따라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다가 표류가 되기도 한다.⁷³⁾ 그러므로 김씨처럼 표류로 인해 남편과 사별하여 수절하거나 자결하는 여성은 실제 문헌상의 기록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 (2)의 김천덕(金天德)은 결혼하여 20년이 지난 후 남편이 진상물을 수송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다가 배가 침몰하였다. 김천덕은 예를 다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뛰어난 외모 때문에 주변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종신 수절하였

71)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열녀조.

72) 처사 조사창의 처 좌씨 비석(1939년 건립, 소재지: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앞면 「處士趙仕昌室 孝烈左氏之閭」

뒷면 「氏籍淸州 苗鄉左時彥之女 曾自于歸 能守婦道 孝養舅姑 克敬家夫 內供外守之行 □ 爲一鄉矜式 高宗乙未 家夫 海洋 骸能莫收 氏呼天循海 誓欲同 蔚然改悟 舅姑在堂 幼孤無依 築壇沿邊 夏衣冬服 新製梵前 極盡禮節 如是卓行 古今罕有 故面里具由 牒報于本牧 則特褒嘉尙 成給完文 亦載於三綱錄 而世久俗 文獻易沒 故不肖 孤胤 誠立棹楔 以表盛典 烈行不朽焉 昭和己卯 子 行淑 孫 泰文泰化謹暨」

73) 고창석, 『조선시대 후기』, 『제주도지』제2권, (제주도, 2006), 519쪽.

다.

사료 (3)의 조사창(趙仕昌)의 처 좌씨(左氏) 역시 남편이 배가 침몰하여 사망하자 예를 다하니 열녀로 정표되어 완문을 받았다.

육지부 사례에서도 날씨와 관련된 열녀 기록들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성격은 조금 다르다. 남편이 화재⁷⁴⁾와 수해로⁷⁵⁾ 위기에 처해 구하려다가 죽은 사례가 있고, 가뭄과 관련된 사례도 있다.⁷⁶⁾

사실 제주 지역 열녀는 수적으로 육지부와 많은 차이가 있고, III장에서 살펴본 듯 열행 역시 다양한 편은 아니다. 그리고 육지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인 남편의 복수와 관련된 열녀⁷⁷⁾, 남편의 병을 위해 할고(割股)를 행하는 열녀⁷⁸⁾ 등의 사례가 제주지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의 풍속에 대해 서술된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면 풍속이 유별나다, 미개하다, 음사를 숭배한다는 등의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육지부와는 떨어진 섬이라는 특유의 문화에서 무속을 숭배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외부의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유별나고 미개하게 보였나보다.

(1) 풍속이 음사(陰祠)를 숭배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⁷⁹⁾

(2) 이 섬은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오로지 무예(武藝)만을 숭상하고 유술(儒

74) 『영조실록』권34, 영조 9년 5월 18일 무술조. 「命旌 黃海道海州 校生 簡哲碩 妻 李氏 門. 李氏 年七十五, 家失火, 突入火中, 抱其夫神主而死. 道臣以狀聞, 特命旌褒.」

75) 『영조실록』권35, 영조 9년 8월 20일 무진조. 「命旌 黃海道平山申思協 妻 洪氏, 瑞興李震元 妻 金氏 門. 思協 浴浦邊, 溺水死, 洪氏 卽投水而死, 震元 爲母摘栗, 道涉水, 水急漂死, 金氏 奔到投水, 爲人拯出, 復自縊而死. 道臣以狀聞, 命旌褒.」

76) 『영조실록』권49, 영조 15년 3월 18일 갑자조. 「公洪道大興郡 有烈女 禹氏, 卽 朴 家婦也. 喪夫寡居, 而其夫之從孫, 欲爲禽犢之行, 至於脅迫, 而終始牢拒, 則乃撲殺而藏屍滅迹. 過九朔後, 禹氏 之族始得屍告官, 元犯逃躲, 終不得成獄. 時 大興 久旱, 郡守 李道善 操文祭其塚, 卽日大雨, 湖人稱之. 宜令道臣, 譏捕元犯, 快正其罪, 旌表 禹氏.」

77) 『영조실록』권53, 영조 17년 6월 9일 임인조, 「特命孝子 金貴贊 及孝婦 朱氏 旌其門. 貴贊 方九歲, 父死抱屍, 三日復甦. 朱氏, 金光壁 妻也, 光壁 父爲人所殺, 朱氏 爲舅十三年不脫衰服, 及仇人杖死, 然後始乃解服. 關東安集御史 金尙迪 以聞, 遂下是命, 又賜 貴贊 復戶.」
『정조실록』권37, 정조 17년 2월 28일 갑신조.

78) 『정조실록』권23, 정조 11년 4월 2일 기해조.

79) 김상헌, 『남사록』, 9월 22일.

術)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봉액(縫掖)을 입고 한묵(翰墨)으로 노니는 이는 사람들이 문득 이를 천하게 여겨 모멸하고 이를 업신여겨 깔아뭉갬다.⁸⁰⁾

(3) 풍속은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를 지키고 양보함이 있다.⁸¹⁾

사료 (1)은 『남사록』의 기록으로 제주 사람들이 예부터 무속을 숭배한다고 서술되었다. 사료 (2)는 정조 5년(1781) 순무어사 박천형(朴天衡) 쓴 절목(節目)의 한 부분으로 제주 사람들이 유학보다는 무속만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들을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겼다고 기록되었고, 사료 (3) 『탐라지』의 제주목 풍속조를 보면 풍속이 어리석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효열록』의 서문인 아래 사료 (1), (2)에 나타나듯 비록 제주가 육지부와는 떨어진 지역이지만 윤리 교화에 힘입어 효자와 열녀의 행실과 정절이 잘 드러나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아래 사료 (3)는 철종 1년(1850) 관하(關河) 이승헌(李承憲)⁸²⁾이 열녀 박씨(朴氏)의 아버지 효자 박계곤(朴繼崑)에 대하여 쓴 글의 앞부분으로 제주사람들이 서울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서울사람들보다 뒤쳐진듯하나 그 품성만큼은 치우치지 않고 타고났다고 하였다.

(1) 제주(濟州)는 궁벽하게도 우리나라 남쪽의 맨 끝이며,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밖에 있어서 예로부터 습속이 준무(蠢賈)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 5전(典)이 온 고을에 드러났다. 조정에 아뢰어, 그들의 살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그 집에 할당된 부역(賦役)을 면제받은 자가 오히려 많은 것은 또한 전후(前後)하여 부임해 온 지주(知州)들이 왕명을 받들어 선양할 책임을 지고 그 교도(敎導)하는 도리를 다한 공로가 아니겠는가.⁸³⁾

80) 박천형 어사의 節目(1781), 「本島, 遜在海外, 專尙武藝, 不貴儒術, 衣縫掖而翰墨者, 人輒賤侮之, 凌轢之。」

81)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풍속조.

82) 이승헌(李承憲)의 호는 관하(關河)이다. 청해백 이지란의 후손이다. 현종 때에 정의현에 위리안치되었고, 해미현감 김응전과 오위장 김계병을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받았다.

83) 제주교육박물관 편·고창석 역, 『孝烈錄』(제주교육박물관, 1996), 19쪽

(2) 이 고을 사람들이 비록 건문이 좁고 괴벽스럽다고는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효행 열의로 세상에 뚜렷하게 드러난 자가 그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보기에 아마도 그러한 사실이 오래되면 파묻혀 없어지고 세상에 전해지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애석히 여길 일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이를 위해 책으로 엮어 효행을 열거해서 온 섬에 널리 배포해야만 이미 지나간 아름다운 행실이 없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앞으로 닥쳐올 일을 격려하는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⁸⁴⁾

(3) 이 섬은 서울과의 거리가 2000리가 되지만, 명성(名聲)과 밝은 문물이 거의 500년간 물들여져 섬사람의 학문·문장·언론·견식 등이 모두 마치 서울에 비해 한 걸음 뒤쳐진 듯 하지만, 대개 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은 것은 하늘에서 타고난 착한 성품이다.⁸⁵⁾

열녀는 조선사회의 보편적인 관념이었다. 그러다보니 지역별로 구체적인 열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관념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졌다.

제주는 민간신앙 때문에 유독 유교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사들과 유배 온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교화 활동에 힘입어 지방 유림들은 점차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유배를 온 유학자들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하고, 유배지인 제주에서의 왕성한 집필 활동 역시 제주에 유교가 널리 퍼지는데 기여를 하였다.

유교가 제주에 널리 퍼진 것은 조선 후기인 19세기 이후이다. 특히 출국금지령이 해제된 후 제주의 유림 중에는 호남 지역으로 건너가 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유교식 예법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앞의 사료들에서도 나오듯 육지부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지만 제주 역시 조선사회 전체가 그러하듯 유교적 교화를 통해 정절관이 정착화 되어가고 19세기에 이르러 열녀로 정표되는 자가 급증하게 된다.

84) 제주교육박물관 편·고창석 역, 앞의 책, 20쪽.

85) 이승헌, 『關河累土書』(1850), 「此島距京師 水陸二千里 聲名文物之侵淫 幾五百季 而島人之學問章言論見識 俱似讓一頭於輦轂之地 地蓋局之也 獨所不局者 秉彝之天」

2. 열녀의 사회적 의미

조선에서는 귀천상하(貴賤上下)를 막론하고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해야 하고 위난을 당하면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는 위난에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죽는 부녀자가 아니라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죽은 남편을 위해서도 죽음으로 함께하는 부녀자가 늘었고 그들을 열녀라고 칭송하고 표창하는 글로 남겼으며, 열녀의 후손들은 조상의 죽음을 명예롭게 생각했다. 그때마다 칭송이 과다할 정도였다. 열녀를 배출한 가문은 향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열녀는 양반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양인에게는 과중한 호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천민에게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를 의미하므로 열녀는 한 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오면 열녀로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⁶⁾

조선은 유교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건국 초부터 일상생활에서 높은 차원의 유교적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풍속의 교화를 강조했다.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면 우선적으로 충신·효자·의부·절부 등 풍속에 관계되는 사람을 포상하도록 하였다. 열녀로 포상을 받게 되면 가문에는 명예가 전해오게 되는데, 돈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던 시대에는 자녀 결혼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가문을 유지하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적으로도 그 의미가 컸지만 실질적으로도 마을에 고을 수령이 새로 부임해오면 열녀나 효자 가문의 어른을 큰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자기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효도하는 사람이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것을 표출하면서 자기의 도덕성을 과시하려는 일도 많이 있었다. 즉 열녀는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

86) 이옥경, 『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이데올로기 비판의 재구성을 통하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48쪽.

회적인 산물인 것이다.

정려를 받은 가문은 세금 감면과 자손의 관리 특채, 부역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러한 혜택 때문에 과부들을 몰래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꾸미는 악행도 행해졌다.⁸⁷⁾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문에 이득을 안겨 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죽음이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 온 신분인 하층민일 경우, 온 사회가 찬사를 보내는 이 같은 죽음으로 신분 상승의 쾌감을 한 순간 느끼며 죽어 갈 수가 있었다.⁸⁸⁾

제주뿐만 아니라 조선사회의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랐다.

조선은 중세적인 봉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도구화하게 되었다. 귀천 상하를 막론하고 조선에서는 과부가 되면 마땅히 수절을 해야 했고,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서 정착되었다.

조선 전기 이전에는 삼년상을 치루거나 『가례』를 준수하는 정도로도 열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 열행 실천 양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단지·할고 등 신체를 훼손해야 열행이 인정되었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이 급증한다는 것에 있다. 자살하는 여성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효자 대비 열녀의 비중도 조선 후기에는 크게 높아진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급속히 남성 위주의 사회로 재편성되어 갔던 것이다.⁸⁹⁾

조선후기 열 관념은 조선전기에 지속적으로 행해진 교화정책에 힘입어 사회전반에 걸쳐 정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사회 질서회복과 안정추구의 방책으로 예를 중시하게 된다. 이러한 열녀의 정표를 통한 교화 정책은 비문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87)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조선시대 열녀담론』(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50~151쪽.

88) 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열녀의 죽음과 虛構性』(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1~72쪽.

89) 이정주, 「전국지리지들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 제28호(한국사상사학회, 2007), 295쪽.

(1) 이씨는 본관이 전주이다. 약관의 나이에 김씨 집안에 시집와서 아버이를 섬기는 효성으로 시부모에게 효도하였고, 손님을 대하는 공경으로 남편을 공경하여 조금도 실수함이 없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로써 공경하여 어긋남이 없었다.

나이 겨우 스물넷에 아들 하나를 낳은 지 열 달만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몇 번이고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봉제(奉祭)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어린 것이 의지할 곳도 없었으므로 마음을 돌이키고 일어나서 상장 제전은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고 말도 웃음도 잇은 채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예식으로 삼년상을 마쳤다.

가세는 본디 가난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통륜하는 중에 원근에 행실이 자자했으므로 전남 유사 및 많은 선비들이 그 탁행을 가상히 여겨 천거한 바 완문이 내려졌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후 작설의 은전에 흠결(欠闕)이 있을까하여 감히 편갈(片碣)을 새겨 적어 여기에 비각을 세운다. 나이 78세에 돌아가셨으며, 이 비석은 1955년 3월에 아들 경평(景平)이 세웠다.⁹⁰⁾

(2) 씨의 본관은 탐라이며 현종 을미(현종 1년, 1835)에 태어났다. 효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열에는 어려움과 쉬움이 있지만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 효에서도 큰 것이다. 아버이를 잘 섬기었고 다룰 것 없이 홀로 살았다. 어머니가 개가시키려 하자 끝내 이를 물리쳤고, 하늘을 감동시켜 남편의 본디의 병을 회복시키고 1남 1녀를 두어,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게된 집안에 대를 이으니, 열이 어려운 것이다. 무인(고종 15년, 1878)에 본 면에서 천거하자 본주 목사가 포양하여 특별히 주육과 문물을 내리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동포들은 착한 천성을 다할 것을 기록하여 후인들이 보면서 감동을 일으키게 함이다.⁹¹⁾

90) 통정 김려관의 처 이씨 비석(1955년 건립, 소재지: 한림읍 귀덕2리 3464-2번지)

앞면 「通政金麗官妻 孝烈李氏之閭」

뒷면 「氏全州后人也 年若冠 并歸于金氏之門 以事親之孝 孝於舅姑 以如賓之敬 敬於夫子□□□ □不矢尺寸 人莫不敬而禮之 年裳二十四 生一子 十月 所天奄逝 幾欲滅性 而顧念 □禮無托 幼孤無依 斷乎反省 強起□事 喪葬祭奠 一遵家禮 不言不笑 天禮終三年 家勢本窮□成富 統倫中 行實聞於遠近 全南有司及多士 嘉其卓行 以所薦報 完文至矣 歲月久遠 或有 欠闕於棹楔之典 坎刻著片碣 建茲碑閭焉 年七十八而終 檀紀四二八八年三月 日子 景平 謹豎」

91) 처사 고영운의 처 양씨 비석(건립연대 미상, 소재지: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앞면 「處士高永雲妻 孝烈梁氏之閭」

뒷면 「氏貫耽羅 憲廟乙未生也 孝有□有難易善 養老孝之大者 善事□ 無異寡居 母欲奪志永矣靡他 □天本病回春 一男一女 繼絕存亡 烈之難者 戊寅本面州牧使 特下褒揚酒肉文物 燦然林總 同胞天賦俱餘□□ 宜於感興焉 改造麗文」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적 시책과 가문의식이 결합되어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대부의 여성뿐만 아니라 열녀로서 국가의 정표를 받은 평민 여성의 수가 전기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초기에는 재가금지조항에 제약을 받는 사대부 여성들에 한정되었던 열녀 규범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잡아갔음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오면 여성들은 정절이라는 이념을 담은 도구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극단적으로 경직된 정절관념이 나타난다. 인간의 삶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윤리가치의 하나였던 열녀 관념은 후기에 이르러 완전 무결한 신체적 순결에만 집착이라는 결벽증과 같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그것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데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⁹²⁾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에서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더불어 친정으로부터 출가외인으로 인정되고 남편을 따라 시가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한다는 의식이 철저히 배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자신을 낳아 준 친정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여야 한다는 효심이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열을 배우고 효를 실천하며 자라나 그들의 현실 삶에서 행하도록 교육되어지고 강요되어 왔다. 이렇게 교육되어진 여인들은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지만, 남편을 보필하는 아내로서의 의무뿐 아니라 시부모를 잘 모시고 시가(媿家)의 대를 이을 의무도 요구되었던 것이다.

92) 허희수, 『조선시대 호남지역 열녀실화 연구』(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1~22쪽.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의 실태와 지역사회의 내에서의 의미, 사회적인 수단으로 변모해나가는 열녀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열녀는 남편에 대해 정절을 지킨 여성을 말한다. 남편이 죽은 뒤 수절을 한다거나, 따라 죽는다거나, 외간 남자의 정조 유린 위협에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해 정절을 지킨 여성들이다.

고려 후기에 대두된 유학의 열 관념은 조선전기에 들어서면서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대부 여성들의 재가금지와 수절강화라는 구체적인 제약을 했고, 조선시대 여성은 아들은 낳아 부계혈통을 잇고 남편과 시가(媿家)를 위해 열녀, 효부가 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될 수 있었다. 유교이념이 가부장성은 여성들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삼은 것이 정표정책(旌表政策)이다.

각종 교화정책과 정표정책을 통해 정절 관념이 사회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정착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자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적 정책과 가문의식이 결합되어 열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환기된다. 양반층뿐만 아니라 열녀로 정표된 일반 백성들의 수도 이 시기부터 급증한다. 이렇듯 열녀는 가부장제 사회의 산물이자, 조선사회가 변모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변화해나간다.

II장에서는 유교사회인 조선사회에서 정절 관념이 어떻게 정립해나갔는지 살펴 보았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배불숭유(排佛崇儒)운동의 선봉자였고, 건국초기부터 유교적 통치이념을 강조했다. 그 결과 불교는 종교적 기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정치이념, 학문, 윤리문제에 있어서는 유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조선은 여성들에 대한 금제(禁制)를 만들어내고, 성종대에 이르러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으로 집약된다.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을 얻는 것이 생

계의 수단이며, 양반신분 유지의 요건이었던 사족(士族)들에게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정절에 대한 가장 철저한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

정절 관념의 정착을 위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열녀의 정표 정책을 시행하였다. 열녀가 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며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서 국가에서도 신중하게 발굴, 심사, 표창하였다. 열녀로 정려가 된 후 구체적인 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완문을 내리고, 상으로 관직 또는 비단, 곡식 등을 내리고 경제적으로 복호(復戶) 등으로 무거운 호역을 면제해주는 혜택과 자손에게 부역을 경감해준다.

조선후기는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국가의 지속적인 유교 보급과 정표정책 등을 통해 정절관은 조선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진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자 사회 질서 회복과 안정 추구의 방책으로 예를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사대부 계층의 여성뿐만 아니라 열녀로 정표되는 평민 여성의 수가 조선 전기에 비해 급증하는 양상은 사대부 여성들에게 한정되었던 정절 관념이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지(耽羅志)』, 『효열록(孝烈錄)』,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등에 기록된 127명의 제주 열녀에 대하여 신분·시기·지역·유형별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호칭, 남편과 아버지의 직역을 기준으로 열녀의 신분을 추정해나갔다. 총 127명 중 40.14%인 51명이 양반이었다. 그 다음으로 상민(9.44%), 천민(7.87%), 중인(2.3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열녀로 정표된 자의 수가 적으나 18세기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후기로 내려갈수록 유교가 지방까지 넓고 깊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조선사회에 유교가 정착된 시기를 17세기로 보았을 때, 열녀 또한 이 시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제주는 육지부에 비해 1세기 정도 늦은 18세기부터 열녀로 정표된 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18세기에 비해 정표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18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열녀 정표자들은 19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한다. 19세기 정표자의 신분은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사족의 급증과 상대적인 하층민의 격감현상은 신분제 붕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천민을 제외하곤 후기로 갈수록 포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양반층의 열녀 비중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열녀 전체 추이와 비교해봤을 때 제주지역 역시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의 정절 숭배 이데올로기가 강해졌고, 정절 이데올로기는 후기로 갈수록 양반층에게 독점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정표자의 신분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구별 없이 포상되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포상자의 신분이 대부분 양반층이었다. 양반층은 성리학적 윤리이념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신분제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사례보다 높은 사람들의 사례가 우선적으로 보고되었으며 피지배층의 부녀자보다 지배층의 부녀자에게 경제력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절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적 윤리이념이 피지배층에 널리 보급되어 피지배층에도 열녀의 비중이 높아진다.

조선시대 제주 열녀의 삼읍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목이 36.22%인 46명, 정의현이 11.02%인 14명, 대정현이 6.29%로 8명이다.

조선시대 열(烈)은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행(行)이 함께 뒤따랐고 이 행은 여성의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총 127명의 열행 행적을 분석해보면 수절이 90명(70.86%), 자결이 37명(29.13%)으로 나타난다. 수절과 자결이라 분류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이고, 대부분의 열행들은 여러 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즉 남편이 병들어 단지나 할고, 상분 등과 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 혹은 훼손시키며 간호하고 남편 사망 후 자결을 한다. 부양할 가족 때문에 자결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수절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 사망 후 수절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거나 시부모가 사망한 후 어머니로써 며느리로써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 후 자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의 신체 훼손은 남편에 대한 지극한 희생과 순종으로 의미화되고 있기 때

문이다. 여성의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숨을 거두고 나면, 여성들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며 그 자신도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고 남은 의무를 이행한 뒤 자결함으로써 열행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한 열녀자료를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는 한반도와 떨어진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또한 토착된 민간 신앙 때문에 유독 유교가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목사들과 유배 온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교화 활동에 힘입어 지방 유림들은 점차 자신들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유배를 온 유학자들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경전을 가르치기도 하고, 유배지인 제주에서의 왕성한 집필 활동 역시 제주에 유교가 널리 퍼지는데 기여를 하였다.

육지부에 비해서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지만 제주 역시 조선사회 전체가 그러하듯 유교적 교화를 통해 정절관념이 정착화 되어가고 19세기에 이르러 열녀로 정표되는 자가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에는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열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바다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남편의 표류로 인해 열녀로 정표되는 사례에 등장하기도 한다.

열녀로 정표가 되면 정려를 받은 가문은 세금 감면과 자손의 관리 특혜, 부역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즉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물질적 이익까지 가져다준다. 그래서 양반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양민에게는 과중한 호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천민에게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를 의미하므로 열녀는 한 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오면 열녀로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온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열녀는 양반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상민에게는 과중한 부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천민에게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열녀는 한 여자의 희생 위에 한 가족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다. 따라서 후기에 오면 열녀로 정표를 받는 것이 개인과 가족의 큰 목표가 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열녀행태를 가져 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문에 영광을 안겨 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죽음이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 온 신분인 하층민일 경우, 온 사회가 찬사를 보내는 이 같은 죽음으로 신분 상승의 쾌감을 한 순간 느끼며 죽어 갈 수가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유교 사상이 육지부에서 비해 뒤늦게 정착하기 시작하여 열녀에 대한 문헌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고, 열녀로 정표된 여성들이 직접 남긴 글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가 단편적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교에서 여성의 정절에 극단적인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점과 제주사회만의 특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에 향후 자료를 보강하여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주읍지(濟州邑誌)』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김정,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신광수, 『탐라록(耽羅錄)』
이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이원진, 『탐라지(耽羅誌)』
이형상, 『남환박물(南宦博物)』
임제, 『남명소승(南溟小乘)』

2. 연구논저

1) 단행본

- 고창석 외,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국립제주박물관 편,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2005.
김봉옥, 『高內里誌』, 고내리, 1980
_____ 편역, 『朴氏三旌門錄』, 密陽朴氏糾正公派宗親會, 1983.
김용덕, 『李朝女性研究』, 숙명여대 출판부, 1976.
김종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남제주군, 『남제주의 문화유적』, 1992.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남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3.
문순덕,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여성-제주열녀들의 삶』, 각, 2007.
박용숙 외,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 박용옥, 『李朝女性史』, 한국일보사, 1976.
- 박주, 『朝鮮時代 旌表政策』, 일조각, 1990.
- _____, 『朝鮮時代の 孝와 女性』, 국학연구원, 2000.
- 북제주군 편,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I』, 북제주군, 1998.
- _____ 편 『北齊州郡 碑石總攬』, 북제주군, 2001.
- _____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 서귀포시 편, 『碑石現況』, 서귀포시, 1999.
- _____ · 제주대학교박물관, 『서귀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0.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삼강행실도 열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연구 입문』, 민속원, 2008.
- 이원진·김찬흡 외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전여강,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예문서원, 1999.
- 제주교육박물관, 『제8회 기획전-탐라의 효자, 열녀전』, 2001.
- _____ · 고창석 역, 『孝烈錄』, 제주교육박물관, 1996.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濟州市 碑石一覽』, 제주시, 2002.
- 제주도, 『濟州忠孝烈誌』, 1984.
- 제주도지편집위원회, 『濟州道誌』제2권, 제주도, 1006.
- 제주문화원, 『(譯註)增補耽羅誌』, 2005.
- 제주유맥육백년사편찬위원회, 『濟州의 儒學關聯 資料와 詩文選』, 2000.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여성사료집 I』, 2007.
- 조은 외,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백과사전』, 1991.
-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지리지총서 『邑誌』 6 제주도, 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2) 논문 및 기타

- 강명관, 「‘삼강행실도’-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 5권, 2002.
- _____, 「節夫, 烈婦, 烈女」, 『동양한문학연구』 25, 2007.

-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존재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제12권, 1995.
- 고두행, 『東國輿地勝覽 孝子·烈女條의 分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권순형, 「고려시대의 수절의식과 烈女」,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권정아,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烈女 分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동전, 「역사 속에 나타난 조선시대 제주의 여성」, 『한국여성학회 지역역사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2001.
- 김미영, 「조선의 유교화 과정에 나타난 女德 담론 분석(1)」, 『여성학논집』제25집,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2008.
- 김혜순·이민주, 「조선시대 열녀를 통해 본 대구지방의 가부장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5.
- 남정효, 『조선초기 삼강행실도를 통해본 열녀정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주, 『朝鮮時代 旌表政策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_____,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의 分析」, 『여성문제연구소』 제20호,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 _____, 「조선시대 대구지역의 효자·열녀」, 『사학연구』제63호, 2001.
- 이배용 「유교적 전통과 변형 속의 가족 윤리와 여성의 지위」, 『여성학논집』제12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연구원, 1995.
- 이영식, 『朝鮮前期 孝子·烈女와 그 類型』,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옥경, 『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영찬, 「'몸'에 대한 유교적 인식-유교사회학 정립을 위한 예비적 논의」, 『동양사회사상』제15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7.
- 이인경, 「개가 열녀담에 나타난 열과 정절의 문제」, 『구비문학연구』제6호, 한국구

- 비문학회, 1999.
- 이정주, 「전국지리지를 통해 본 조선시대 忠·孝·烈 윤리의 확산 양상」, 『한국사상사학』제28권, 한국사상사학회, 2007.
- _____, 「조선시대 貞節 倫理의 실천자와 身分」, 『역사민속학』제24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제85호, 진단학회, 1998.
- 이희환, 「조선 말기의 旌閭와 家門 숭상의 풍조」, 『조선시대사학보』제17집, 2001.
- 정지영, 「열녀 만들기의 역사」, 『여성학논집』제20집, 2003.
- 진재교, 「李朝後期 漢詩에 나타난 ‘烈’의 時代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 한명숙, 『朝鮮時代 儒教的 女性觀의 原理論的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한희숙,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최신 동향」, 『인문과학연구』제8권,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허희수, 『조선시대 호남지역 열녀실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인숙, 『조선시대 열녀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황현주, 『朝鮮後期 從死形 烈女의 죽음과 虛構性』,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부록>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목록*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강씨	고계현의 처 강충백의 딸	-	사별 후 투신 자결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고성현의 처	-	사별 후 시부모 봉양	마을	복호, 증손 백련도 효행으로 군에서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고여진의 처	-	사별 후 시부모 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고운은의 처	-	단지수혈로 시부 간호 장손 치권도 효행	마을	정표	-	속수삼강록
강씨	김종집의 처	-	청상과부, 시부봉양 아들도 효행함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서인보의 처	-	재가권유 물리치고 수절	마을	-	-	속수삼강록
강씨	송양변의 처 강시홍의 딸	-	수절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양원방의 처	대정현 (신창리)	시모 병간호 사별 후 가족 부양	사림	-	-	증보탐라지
강씨	장인화의 처	-	단지 수혈로 42세까지 남편의 목숨 연명 아들 성장하자 자결	사림	-	-	속수삼강록
강씨	한억관의 처	-	20세에 사별, 수절	마을	현손 승현도 효행으로 완문 내림	-	속수삼강록
강씨	현홍길의 처	-	청상과부, 노시부모 병간호	사림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홍봉호의 처	-	20년간 시부 간호 수절	사림	완문	-	속수삼강록
강씨	-	정의현 (수산리)	시부모 봉양, 수절	사림	고종 19년(1882) 아들 고영학에게 완문 내리고 복호	-	속수삼강록
강유진	시노 김치백의 처	제주목 (곽지리)	모친이 재가를 시키려하자 남편 무덤에 땅을 파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	마을	정조 4년(1780) 정려, 복호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건립연대 미상	비석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효열록
강조이 (召史)	고영도의 처	정의현 (수산리)	시부모 봉양, 수절	마을	순조 22년(1822) 암행어사가 복호함	-	효열록
강조이 (召史)	한광혁의 모	정의현 (수산리)	시부모 봉양, 수절	마을	순조 22년(1822) 정표 암행어사가 부역 면제	-	속수삼강록 효열록

* 열녀의 인명 순으로 표 작성함.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고계현	문철식의 처 고명락의 딸	제주목 (고내리)	단지 수혈로 남편 간호, 사별 후 절식 사망	마을	고종 18년(1881) 백낙연 목사가 표창(완문), 복호 후에 고씨의 제사를 모시는 아들과 손자에게 노역 일체를 면제하라는 완문 내림	-	고내리지
고소락	박계곤의 딸 박씨부인의 계집종	제주목 (오등동)	주인의 정절을 본받아 절개지킴	어사 심낙수	정조 18년(1794) 정려	제주시 오등동 1201번지 건립연대 미상	박씨삼정문록 비석 정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고씨	가선 진명서의 처 가선 고은복의 딸	정의현 (용수리)	단지 수혈	마을	완문, 정표	한경면 용수리 1935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고씨	가선대부 정연집의 처 통정대부 고유록의 딸	제주목	단지수혈, 사별 후 따라 죽으려고 했으나 자식 때문에 자결포기	유림	1799년 정려	한림읍 한수리 858-1번지 1799년	비석
고씨	강재룡의 처	-	단지 수혈	마을	-	-	속수삼강록
고씨	강종득의 처	-	20세에 사별 가족 부양 때문에 자결 포기	마을	복호	-	속수삼강록
고씨	강필홍의 처	-	상분으로 시부 병세 가늠	마을	어사가 쌀과 고기 하사 제주목사가 닭 두 마리 하사	-	속수삼강록
고씨	김려홍의 처	제주목 (월정리)	시부모 봉양 위해 자결 포기 수절	마을	포상	구좌읍 월정리 건립연대 미상	속수삼강록
고씨	박씨의 처	-	18세에 남편 사망, 장례 후 손으로 묘를 파고 자결	마을	광무 9년(1905) 김중배 군수가 제문 내림	-	속수삼강록
고씨	사인 강명복의 처 고응례의 딸	제주목 (봉개동)	남편 병간호 시부모 봉양	마을	-	제주시 봉개동 봉개초등학교 1935년 건립	비석
고씨	선업 종사자 김여빈의 처	제주목 (북촌리)	남편이 타향에서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4천리를 가서 남편의 시체를 운고하여 안장함	마을	고종 2년(1865) 아들과 함께 정표됨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고씨	업무 강사철의 처	대정현 (고산리)	어부인 남편 실종 후 나무에 목매어 자결, 남편의 시체가 바위 나무 아래에 떠올랐음	관관 신재우	고종 3년(1852) 관관 신재호가 절부암이라 명명함,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도록 함	한경면 고산리 1867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고씨	오경인의 처	정의현 (수산리)	사별 후 시부모 봉양	마을	1843년 정표	성산읍 수산리 1843년 건립	비석
고씨	학생 문명훈의 처 고종언의 딸	제주목 (납읍리)	남편의 위해 단지 수절 시부모 봉양	마을	고종 21년(1884) 완문	애월읍 납읍리 1992년 개건	비석 증보탐라지
고옥매	관노 유제기의 처	제주목 (노형동)	평생 남편의 삭망을 지냄, 수절	어사 심락수	정조 18년(1794) 정려 암행어사가 부역 면제	애월읍 납읍리 건립연대 미상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국지	품관 홍질의 첩	제주목 (신촌리)	주변 유혹 물리치고 수절	민기 목사	인조 12년(1634) 정려	조천읍 신촌리 256번지 1688년 건립 1928년 개건	남환박물 속수삼강록 비석 역주탐라지 인조실록 효열록
김씨	가선대부 호조참판 조명윤의 처	정의현 (성읍리)	상분으로 남편 병세 가능함. 사별 후 자결 시도 하였으나 평생 수절	마을	고종 28년(1891) 정문과 비석 세움	표선면 성읍리 969-4번지 1891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김씨	강병식의 처	제주목 (김녕리)	시부모 봉양, 양자입적	마을		구좌읍 김녕리 건립연대 미상	비석
김씨	고명호의 처	-	머리카락 자르면서 남편 간호	마을	군수가 포양하고 완문 내립		속수삼강록
김씨	고재문의 처	-	시부모 봉양	-	-	-	속수삼강록
김씨	김광빈의 처 김덕대의 딸	정의현 (위미리)	남편 사망 후 23세에 목매어 자결	-	순조 22년(1822) 정표	-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씨	김두행의 처	-	남편 사망 후 맹인 시부모 봉양	-	-	-	속수삼강록
김씨	김자현의 처	-	사별 후 집안 돌봄 특별음식으로 시부모 봉양	마을	-	-	속수삼강록
김씨	문규빈의 처	-	남편 사후 시부모 봉양	마을	-	-	속수삼강록
김씨	송지옥의 처	-	두 번째 아내이며 재가 권유 물리치고 수절	-	-	-	증보탐라지
김씨	양일복의 처	제주목 (오라동)	남편 사망 10개월 후 투신 자결	-	-	-	증보탐라지
김씨	유생 강응주의 처	대정현 (창천리)	사별 후 절망상태였다가 시모 사망 후 자결	사림	정조 5년(1781) 정표	안덕면 창천리 453-1번지 건립연대 미상	비석 속수삼강록 여지도서 증보탐라지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김씨	유생 김창은의 처	대정현 (중문동)	남편 사망 후 목매여 자결	마을	현감이 김씨 영전에 제주념 목사 이공이 복호 내림 정조 18년(1794)에 어사 심락수가 아뢰 포양지전	서귀포시 중문동 2082-1번지 1888년 건립 1963년 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여지도서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씨	유학 김정옥의 처 김하의 딸	정의현 (위미리)	남편 기일에 자결	사림	정조 6년(1782) 정표	남원읍 위미리 1934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여지도서 증보탐라지
김씨	윤방언의 처 효자 김치화의 딸	-	시부와 남편이 서울로 가던 중 일보에서 표류 후 사망 일본에서 시체를 찾고 장사 지냄	마을	-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김씨	이기조의 처 김종련의 딸	-	남편이 유학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집안 다스림	-	-	-	속수삼강록
김씨	전유일의 처	-	수절	사림	포양	-	속수삼강록
김씨	정시백의 처	-	시부모 봉양	마을	군에서 원문내림	-	속수삼강록
김씨	처사 고봉익의 처	제주목 (수원리)	시부모와 자식 위해 자결 포기 수절	마을	광무 8년(1904) 표창	한림읍 수원리 수원초등학교 서남쪽 1904년 건립	비석
김씨	처사 김맹원의 처 열녀 최씨의 증손부	제주목 (귀덕리)	사별 후 시부모 봉양 남편 기일에 자결	1911년 군수가 장예원에 보고	-	한림읍 귀덕1리 1911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김씨	처사 김홍복의 처	제주목 (대림리)	남편 장례 후 자결 시도 품팔이로 시부모 봉양	마을	현종 7년(1841) 원문, 부역 면제	한림읍 대림리 1930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김씨	학생 오룡복의 처	제주목 (아라동)	남편 병간호 사망 후 절식 자결	암행어사 이재수	순조 14년(1814) 정려	제주시 아라동 2025번지 1867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씨	한량 이행숙의 처	제주목 (회천동)	남편 사망 후 시부모 봉양 집안 일으킴	마을	-	제주시 회천동 서회천 마을회관 동쪽 1916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김씨	허인창의 처	-	청상과부, 시부모 봉양	-	어사가 복호함	-	속수삼강록
김씨	현상관의 처	-	수절, 병약한 시부 봉양 증손자 정일도 효행	사림	고종 19년(1882) 원문	-	속수삼강록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김씨	현여명의 처 김천중의 딸	-	수절, 양자 입적하여 가문 대 잇기	마을	-	-	속수삼강록
김씨	김제민의 처	-	26세에 남편과 사별 소상 때 자결	-	정표	-	속수삼강록
김옥	시비	제주목 (외도동)	사별 후 자결 시도 시부 봉양	마을	-	-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조이 (召史)	송계호의 처	제주목 (하도리)	20세 사별, 귀한 음식으로 노시부모 봉양	마을	순조년간에 정표, 양자 송자의를 포상하고 부역 면제	-	증보탐라지 효열록
김천덕	사노 연근의 처 김청의 딸	제주목 (곽지리)	남편이 진상물을 수송하던 중 배가 침몰함, 천덕은 3년 동안 상식(上食)을 하지 않음	임진 목사	순조 19년(1577) 정려	곽지리 1958-1번지 (리사무소) 1863년 건립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비석 선조실록 증보탐라지
문씨	김석봉의 처 문백선의 딸	제주목 (고내리)	재가 권유 물리침 양자 입적 가문 유지	-	관에서 표창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문씨	이동백의 처	-	남편 사후 자결 시도 30년간 시부모 봉양	마을	표창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문씨	중추원부사 이침의 처	-	구혼자 물리치고 수절	-	세종 10년(1428) 정려	-	세종실록
문씨	한량 송덕보의 처	제주목 (건입동)	남편이 바다에서 실종되어 1년 후 절식, 자결	-	철종 11년(1860) 정표, 철종 13년(1862) 정려문	조천읍 교래리 1950년 건립	속수삼강록 비석 증보탐라지 효열록
박씨	통정대부 문상환의 처	-	근검절약, 국채보상, 수절	-	군수 포상	-	속수삼강록
박씨	향사 이향춘의 처 효자 박계근의 딸	제주목 (엄장리)	청상과부, 사람들이 정절부인으로 칭함	어사 심락수	정조 18년(1794) 정려	제주시 오동동 1201번지 1978년 개건	박씨삼정문록 비석 증보탐라지 효열록
박씨	효자 통정대부 김홍조의 처	제주목 (대림리)	단지 수혈로 시부모 봉양	-	철종 11년(1860) 완문	한림읍 대림리 반석빌라 앞 1954년 건립	비석
박조이 (召史)	주리 손처권의 처	제주목 (장전리)	시부모 병간호 남편 기일에 자결	어사	순조 16년(1816) 정표	애월읍 장전리 309-1번지 1818년 건립	비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백씨	김광록의 처	-	30년간 시부모 봉양, 남편 기일에 자결	마을	복호	-	속수삼강록
백씨	안제신의 처 백일장의 딸	제주목 (화북동)	사별 후 연못에 투신 자결	마을	관에서 완문 내림	제주시 화북동 1942년 건립	속수삼강록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부가의 처	군교 부가의 처	정의현 (의귀리)	다른 남자가 만졌던 손을 자름	-	인조 12년(1860) 정표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록
부씨	손영관의 처	제주목 (오라동)	단지수혈로 남편 간호 사망 후 투신 자결	-	철종 11년(1860) 정표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지
부씨	유생 오극지의 처	정의현 (고성리)	23세에 남편 사망 장사 지낸 후 자결	마을	-	-	속수삼강록 효열록
송씨	부동환의 처 송세철의 딸	-	남편 사망시 가례 철저 시부모 봉양 손자 부사규도 효행	마을	-	-	속수삼강록
송씨	양기석의 처 통정대부 침추 오위장 송민환의 딸	제주목 (봉개동)	남편 삼년상 치를 무렵 아들도 사망하여 자결	-	1917년 정표	제주시 봉개동 감협선과정 옆 1917년 건립	비석
송씨	한계휴의 처 송성행의 딸	-	남편 사망 후 시부모 봉양	마을	군에서 원문내림	-	속수삼강록
송씨	홍정빈의 처	-	남편 사망 후 시부모 봉양	사림	-	-	속수삼강록
송천향	정의향교 계집종 강시현의 처 송시중의 딸	정의현 (성읍리)	남편 사망 후 어린 자식과 가문 유지 목적으로 삶	정의현감 조세천 어사 이수봉	영조 48년(1772) 정표	표선면 성읍리 1907년 건립 1971년 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록
신씨	고홍의 처	-	사별 후 노시모 봉양	마을	-	-	속수삼강록
안씨	백신태의 처	-	시부모 봉양, 머리카락 팔아서 시부모 장례 치름	마을	제주목사가 원문, 복호	-	속수삼강록
양순자	진순종의 처	제주목 (명월리)	남편이 한국 전쟁 때 순국하자 자결 함	-	1956년 모슬포 경찰서장 현병두와 한림읍장 임상국이 비를 세움	한림읍 명월리 입구 1987년 건립	비석
양씨	고서호의 처	-	16세에 남편 사망 대상 후 목매어 자결	마을	포양, 원문	-	속수삼강록
양씨	김봉수의 처	-	남편 병간호	마을	-	-	속수삼강록
양씨	문치백의 처 의부 박씨의 며느리	-	19세에 남편 사망 후 수절	마을	군수 포양	-	속수삼강록
양씨	변지환의 처	제주목 (도련동)	남편 3년상 치른 뒤 우물에 빠져 자결	마을	철종 11년(1860) 정표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양씨	유생 전형원의 처	제주목 (아라동)	남편 사망 후 자결	암행어사 이재수	순조 14년(1814) 정려	제주시 아라1동 650번지 1894년 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양씨	조계상의 처	제주목	남편 위해 먼저 투신자살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효열록
양씨	처사 고영운의 처	제주목 (금성리)	남편 사망 후 시부모 병간호 집안 일으킴	면에서 천거	고종 15년(1878) 목사가 포양하여 특별 음식 하사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건립연대 미상	비석
양씨	처사 임도관의 처	대정현 (중문동)	남편 위해 단지 수혈 사망 후 자결	마을	정표	서귀포시 중문동 1495번지 1963년 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오씨	김창언의 처 학생 오원반의 딸	정의현 (의귀리)	아들 출산 한달 후 사별함. 뒤따라 투신 자살	-	순조 12년(1812) 정려	남원읍 태흥2리 1994년 개건	비석 속수삼강록 순조실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오씨	박성림의 처	대정현 (화순리)	남편 사후 절식 자결 시도 후 종신 수절 시부모 봉양	사림	제주목사가 완문 내림, 광무 4년(1900) 쌀과 고기 하사받음	대정읍 신평리 138-1번지 1941년 건립	비석
오씨	유생 강위보의 처	제주목 (봉성리)	약혼자 사망 후 장례 치르고 뒤따라 자결	마을	정조 4년(1780) 정려	애월읍 봉성리 1913년 개건	비석 효열록
오씨	현능략의 처	-	상분 사별 후 시부모 봉양	사림	-	-	속수삼강록
오조이 (召史)	김천종의 처	정의현	사별 후 자결	목사	영조 33년(1757) 정려	-	증보탐라지 효열록
윤씨	처사 하용우의 처 사인 윤응연의 딸	제주목 (대림리)	30세에 사별 시부모와 어린 자식 돌봄	마을	완문	한경면 대림리 1973-1번지 1946년 건립	비석
이씨	김성범의 처 이종겸의 딸	-	수절, 서자 양육	-	-	-	속수삼강록
이씨	문일홍의 처	-	사별 후 시부 봉양	-	고종 31년(1894) 복호 호역 경감	-	속수삼강록
이씨	박수천의 처	-	남편 장례 후 23세때 자결	마을	-	-	속수삼강록
이씨	백운제의 처 통정 이회구의 딸	-	20세에 사별하고 태중의 아이 때문에 자결하지 못함	-	-	-	증보탐라지
이씨	송일빈의 처	-	몸이 불편한 남편과 시부모 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이씨	처사 강응록의 처	대정현 (하예래리)	사별 후 절식 자결	마을 사림	고종 2년(1865) 정려 관에서 완문 내림 복호	서귀포시 중문동 1495번지 1931년 건립	비석
이씨	통정 김려관의 처	제주목 (귀덕리)	사별 후 집안 경제 맡음 시부모 봉양	전남 유사 사림	완문	한림읍 귀덕2리 3464-2번지 1955년 건립	비석
임씨	강인제의 처 임도문의 딸		풍병인 시부모 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장씨	처사 임유근의 처	제주목 (대림리)	남편이 사망할 지경에 이르자 단지로 연명케 함, 종신 수절	마을	고종 18년(1881) 완문	한림읍 대림리 가새기왓 1937년 건립	비석
장씨	통정대부 고정언의 처	제주목 (금성리)	시모 봉양 국채 보상에 참여	마을	광무 11년(1907) 군에서 포양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건립연대 미상	비석
정씨	강세평의 처 정경원의 딸	-	시부모 봉양	-	관에서 포상하고 복호	-	속수삼강록
정씨 (고려인)	직원 석방리 보개의 처	정의현	주변 유흥과 재가 권유 물리침	안무사 윤임	태종 13년(1413) 정려문	남원읍 한남리 1834년 건립	남원박물관 비석 신증동국 여지승람 증보탐라지 태종실록 효열록
좌씨	고명관의 처	-	농혈을 빨아 시모 간호, 죽은 남편의 형제들 양육 국채보상 참여	마을	목사가 완문 내림	-	속수삼강록
좌씨	처사 조사창의 처 좌시언의 딸	제주목 (금성리)	사별 후 자결 시도 시부모 봉양, 수절	마을	광무 5년(1901) 제주목사가 완문 내리고 삼강록에 수록	애월읍 금성리 600-1번지 1939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주조이 (召史)	방군 고거상의 처	제주목	사별 후 목매에 자결	-	영조 20년(1744) 정표	-	속수삼강록 탐라기년 증보탐라지 효열록
채씨	박한순의 처	-	단지 수혈로 남편 간호 사별 후 수절	마을	관에서 복호, 완문 내림	-	속수삼강록
최씨	고명득의 처	-	시부모 봉양, 수절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최씨	양영철의 처	-	사별 후 수절 시부모 봉양	마을	제주목사가 복호	-	속수삼강록

인명	신분	마을	열행내용	추천자	정표	비석	출처
최씨	학생 김광삼의 처	제주목 (귀덕리)	사별 후 수절	마을	순조 22년(1822) 정표	한림읍 귀덕1리 창녕거리 1822년 건립	비석 속수삼강록
한씨	김영은의 처	제주목 (월정리)	재가 권유 물리치고 수절 시부모 봉양	마을	광무 4년(1900) 원문 내립	구좌읍 월정리 산28-1번지 버스정류소 앞 동산 1999년 개건	비석
허씨	김재옥의 처	제주목 (대림리)	남편 위해 단지 수절	면에서 추천	고종 15년(1878), 제주목사가 원문 내립 자손은 영원히 호역 면제	-	속수삼강록
현씨	강완혁의 처	-	시부모 봉양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현씨	강일명의 처	제주목 (수원리)	사별 후 품팔이로 시부모 봉양, 가문 유지	-	군에서 원문 내리고복호	한림읍 수원리 건립연대 미상	속수삼강록
현씨	송익초의 처	-	남편 표류로 사망 후 수절	마을	-	-	속수삼강록
현씨	오위장 고재만의 처 현재조의 딸	-	사별 후 시부모 봉양	마을	군에서 원문 내립	-	속수삼강록
현씨	유인 고선옥의 처 현인백의 딸	제주목 (산양리)	사별 후 시부모 봉양 가문 일으킴	마을	광무 4년(1900) 원문 내립	한경면 산양리 1963년 건립	비석
현정매	변종원의 처	정의현 (법환동)	사별 후 한달간 식음전폐 목매어 자결	마을	고종 19년(1882) 정려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효열록
홍성	조취승의 처 진무 홍범식의 딸	-	남편의 첩을 두어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과 아들 사망 후 자결	마을	순조 34년(1834)	-	효열록
홍조이 (召史)	김창욱의 처 향리 홍인효의 딸	제주목	남편 질병 때문에 비관 자살	목사 김윤	영조 20년(1744) 정표 목사 김윤이 집을 방문하고 아들 덕령을 성장으로 임명	-	속수삼강록 증보탐라지 탐라기년 효열록
홍조이 (召史)	현도견의 처	정의현 (오조리)	사별 후 수절	마을	완문	-	속수삼강록 효열록